

## 1. 개정이유

공직자의 재산심사를 강화하고 퇴직공직자 재취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법률 제16671호, 2019.12.3. 공포, 2020.6.4. 시행예정)됨에 따라, 재산등록 및 재산변동사항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 안전·방산분야 취업심사대상기관 명세서 서식을 신설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재산등록 및 신고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 1) 비상장주식의 가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 산식을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마련함(안 제2조의2 및 별지서식 신설)
- 2) 부동산·비상장주식 등 특정재산에 대해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할 수 있도록 재산등록 및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식을 개정함(별지서식 개정)

### 나. 취업제한제도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 1) 국민안전·방산분야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 확대에 따른 고시를 위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명세서를 통보받을 수 있는 서식을 신설함(안 제16조제4호·제5호 및 별지서식 신설)
- 2) 법 개정으로 누구든지 청탁·알선행위 신고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제3자 신고서식을 마련함(안 제17조의4 및 별지서식 개정·신설)
- 3) 취업심사대상기관 용어 정비(안 제16조, 제18조, 별지서식 개정)

다. 기타 재산등록, 주식백지신탁 및 취업심사 관련 그간의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별지서식 개정)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략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비상장주식의 평가액 계산방법) ① 영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이하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을 신고하는 재산등록의무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4조의3제2항의 계산식에서 1주당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당기 순이익의 가중평균액은 재산등록 기준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1주당 당기순이익을 최근의 사업연도 순으로 각각 3과 2와 1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연도별 1주당 당기순이익은 각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해당 재무제표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가액으로 한다.

④ 영 제4조의3제2항의 계산식에서 1주당 순자산가치는 재산등록 기준일을 기준으로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순자산가액을 해당 재무제표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

식총수로 나눈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⑤ 영 제4조의3제5항에 따라 비상장주식 가액산정을 위한 정보의 요청은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3조의3제3항 중 “별지 제7호의3서식 및 별지 제7호의4서식”을 “별지 제7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7조의2 중 “별지 제7호의3서식 및 별지 제7호의4서식”을 “별지 제7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국유재산”을 “국유·공유재산”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취업제한기관의 명세서 통보)”를“(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 통보)”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3조제6항”을 “영 제33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취업제한기관”을 각각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 제3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 별지 제18호의4서식

5. 영 제3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 별지 제18호의5서식

제16조의2 중 “별지 제18호의4서식”을 “별지 제18호의6서식”으로, “별지 제18호의5서식”을 “별지 제18호의7서식”으로 한다.

제16조의3제1항 중 “별지 제18호의6서식”을 “별지 제18호의8서식”으로

한다.

제16조의4 중 “별지 제18호의7서식”을 “별지 제18호의9서식”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후단 중 “별지 제18호의5서식”을 “별지 제18호의7서식”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 중 “별지 제18호의5서식”을 “별지 제18호의7서식”으로 한다.

제17조의4의 제목 “(부정한 청탁·알선 행위신고)”를 “(청탁 또는 알선 행위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별지 제20호의6서식”을 “별지 제20호의6서식 및 제20호의7서식”으로 한다.

제18조 중 “취업제한기관”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법 제8조의2제1항제4호”를 “법 제8조의2제2항제4호”로, “의결의 요청이나”를 “의결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4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의4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9호의3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4호의5서식, 별지 제14호의6서식, 별지 제14호의13서식, 별지 제14호의15서식, 별지 제14호의16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8호의2서식, 별지 제18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의4서식, 별지 제18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8호의6서식, 별지 제18호의7서식, 별지 제18호의8서식, 별지 제18호의9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 별지 제20호의2서식, 별지 제20호의3서식, 별지 제20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7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3 제3항·제7조의2 및 별지 제7호의3서식 내지 별지 제7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최초 재산등록 신고서

(16쪽 중 1쪽)

신고인 (등록 의무자)	성명	(한글)	소속		
		(한자)	직위		
	주민등록번호		직급 등		
	연락처	주택 (    )		휴대전화	
		직장 (    )		전자우편주소	
	주소	주택 (    -    )			거주형태
직장 (    -    )					

### 등록사항

<b>재산등록 기준일</b>				
<b>재산등록사항</b> (해당 항목에 "√" 표시)	<input type="checkbox"/> 부동산 <input type="checkbox"/>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input type="checkbox"/> 현금·수표 <input type="checkbox"/> 예금 <input type="checkbox"/>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input type="checkbox"/> 증권 <input type="checkbox"/> 채권 <input type="checkbox"/> 채무 <input type="checkbox"/> 금·백금 <input type="checkbox"/> 보석류 <input type="checkbox"/> 골동품·예술품 <input type="checkbox"/> 회원권 <input type="checkbox"/> 지식재산권 <input type="checkbox"/> 합명·합자·유한회사 <b>출자지분</b> <input type="checkbox"/>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input type="checkbox"/> 재산등록사항 없음			
<b>그 밖의 사항</b> (해당 항목에 "√" 표시)	<input type="checkbox"/> 친족 등록 여부	<input type="checkbox"/> 공개    [(    )신규 / (    )승진]	<input type="checkbox"/> 비공개	

본인은 공직자로서 명예를 걸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서약하며, 「공직자윤리법」 제 5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 재산을 별지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고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등록기관의 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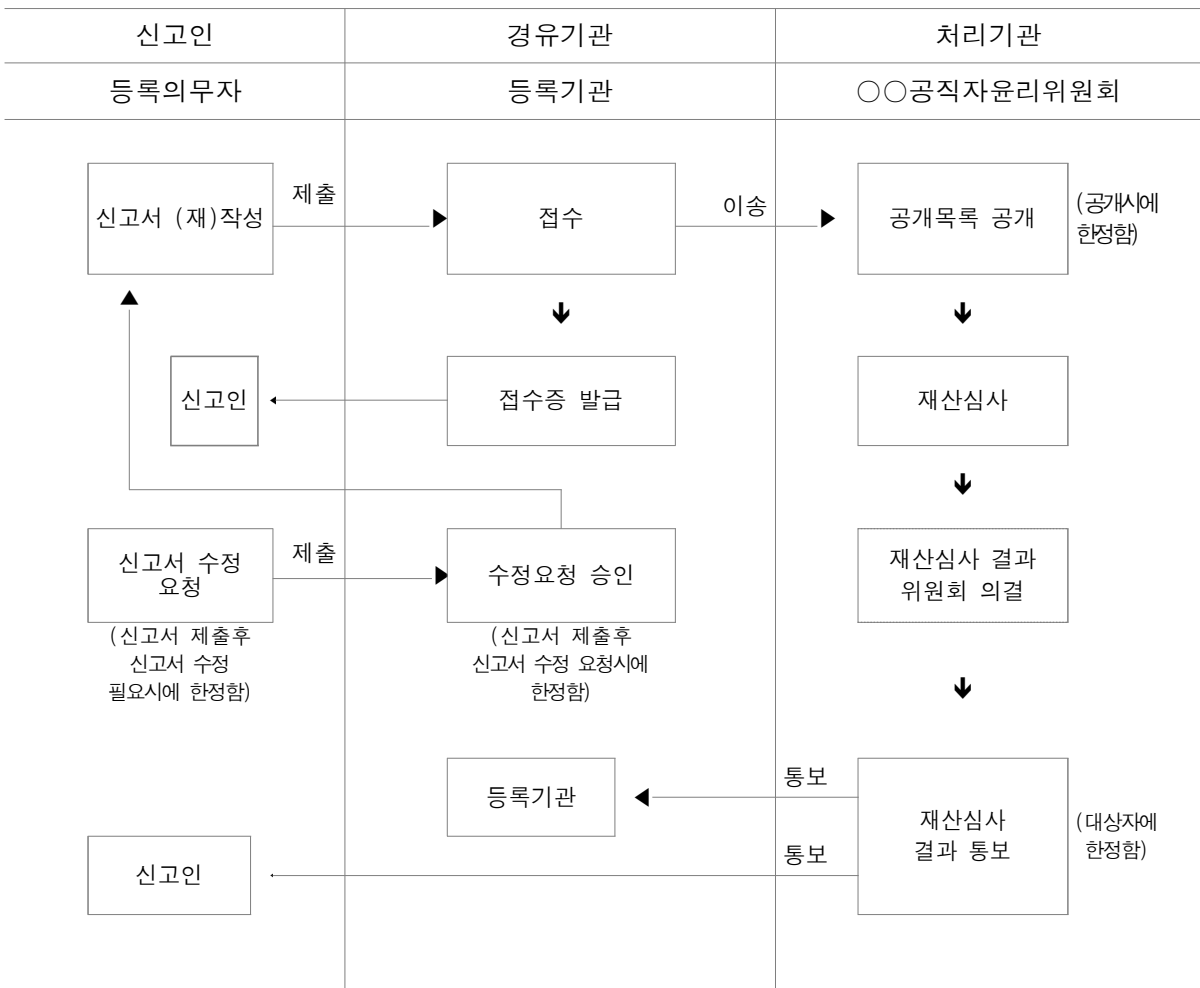
### 작성방법

1.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 란 작성 방법
  - 가.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나.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 [예: 서기관, 8등급]
2. 외국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십시오.
3. '거주형태'란: 주소지의 거주형태(자가, 전월세, 기숙사, 관사, 친척집 등)를 적으십시오.

297mm×210mm(백상지 80g/㎡)

업무 처리절차

이 신고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1. 친족사항(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일련 번호	성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소	고지 거부	등록 대상	직업	거주형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계존속(부모) 중 사망하신 분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 [ ]모

※ 배우자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혼 [ ]이혼 [ ]사별

※ 자녀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대상 자녀 없음

작성방법

1.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등록재산의 유무나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적으십시오.
2. 외국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십시오.
3. '고지거부'란: 「공직자윤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직계존속·직계비속의 경우에는 "√" 표시를 하십시오.  
 ※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3년마다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등록대상'란: 배우자, 고지거부 허가를 받지 않은 직계존속·직계비속은 "√" 표시를 하십시오.
5. '직업'란: 직장명·직위, 학교명·학년 등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6. '거주형태'란: 주소지에의 거주형태(자가, 전월세, 기숙사, 관사, 친척집 등)를 적으십시오.

## 2. 최초재산등록신고 총괄표

※ 뒤에 나오는 재산항목별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하십시오.

재산항목	관계	권리자	권리종류	가액 (실거래가격)	형성과정	비고
▶ 토지(소유권·지상권·전세권)(소계)						
				( )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기타:	
▶ 건물(소유권·전세권)(소계)						
				( )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기타: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 )		
▶ 현금(수표 포함)(소계)						
▶ 예금(소계)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소계)						
▶ 증권(주식·국채·공채·회사채·백지신탁·주식매수선택권 등)(소계)						
			비상장주식 (법 제4조제3항 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에 한함)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취득일자: ·취득경위: ·기타:	
▶ 채권(소계)						
			사인 간 채권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기타:	
▶ 채무(소계)						
			사인 간 채무		·취득일자: ·취득경위: ·기타:	
▶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소계)						
				( )		

재산항목	관계	권리자	권리종류	가액 (실거래가격)	형성과정	비고
▶ 보석류(소계)				( )		
▶ 골동품 및 예술품(소계)				( )		
▶ 회원권(소계)				( )		
▶ 지식재산권						
▶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소계)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기타: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고지거부 사항						
	총계					

작성방법

1. 재산항목

- 재산종류별로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되, 다음의 권리명세를 적으십시오.
- 토지: 소재지·면적 등을 적으십시오(임야·전·답·대지·잡종지 등).
- 건물: 소재지·면적 등을 적으십시오(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상가·빌딩·오피스텔·사무실 등).  
※ 미입주 분양아파트도 적으십시오.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4.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의 작성방법 참조
- 현금(수표 포함)
- 예금: 개인별·예탁기관별로 예탁기관명·계좌번호 등을 적으십시오(파생상품증거금 포함).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개인별·예탁기관별로 예탁기관명·계좌번호 등을 적으십시오.
- 증권: 예탁기관·종목명·보유량 등을 적으십시오[예: ○○증권 ○○전자(보유량 100주)].
- 채권: 채무자명과 연락처(주소·전화번호 등)를 적으십시오.
- 채무: 금융기관 채무는 은행명·계좌번호를, 사인 간 채무는 채권자명과 연락처를, 건물임대 채무는 물건 주소를 적으십시오.
- 금·백금: 종류·함량·중량 등을 적으십시오.
- 보석류: 보석의 종류·크기·색상 등을 적으십시오.
- 골동품·예술품: 종류·크기·작가 및 제작연대 등을 적으십시오.
- 회원권: 발행인, 회원권 번호 등을 적으십시오.
- 지식재산권: 명칭·등록번호·저작물의 종류 등 구체적 권리명세를 적으십시오.
-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출자지분: 회사명, 출자가액, 지분비율, 재산등록 기준일 이전 최근 사업연도의 그 회사 결산서상의 연간매출액을 적으십시오.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법인명, 출연재산, 보유직위 등을 적으십시오.

2. 관계 및 권리자

- 본인과의 관계 및 친족의 성명을 적으십시오.
-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직계존속·직계비속도 '고지거부 사항'란에 본인과의 관계를 적은 후 '비고'란에 고지거부 사유 및 고지거부 허가일 등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예: 독립생계유지, 2007. 3. 3.).

3. 권리종류

- 부동산(토지·건물):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사실상 소유권·분양권 등
- 부동산에 준용하는 권리: 자동차·광업권·어업권·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
- 현금
- 예금: 예금의 종류를 적으십시오(예: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보험, 공제, 수익증권 등).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예금의 종류를 적으십시오.
- 증권: 상장주식·비상장주식·국채·공채·회사채·백지신탁·주식매수선택권 등
- 채권: 사인 간 채권 등
- 채무: 금융기관 채무, 사인 간 채무, 건물임대 채무 등
- 금·백금: 금·백금의 종류 또는 제품명
- 보석류: 보석의 종류(다이아몬드 등) 또는 제품명
- 골동품 및 예술품: 도자기·서양화·동양화·서예·공예·수예·조각·칠기 등
- 회원권: 골프회원권, 헬스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
- 지식재산권: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 등
-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4. 가액

- '가액'란은 재산항목별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하십시오.
- ( ) 안에는 실거래가격(실매입액)을 적으십시오.

5. 형성과정

- 재산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부동산(토지·건물), 증권 중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 및 주식매수선택권, 사인 간 채권, 사인 간 채무,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에 대하여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6. 총계

- 재산항목별 가액 또는 실거래가격을 합산하여 기재하되, 증권 중 주식매수선택권, 지식재산권,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총계에 반영하지 마십시오.

### 3. 부동산

#### 가. 토지(소유권·지상권·전세권)

일련 번호	권리자	관계	권리의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	가액 (천원)	실거래가 격(천원)	형성과정	비고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기타:	

####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대지 위에 건물이 있으며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 '가. 토지' 항목이 아닌 '나. 건물' 항목에 적으십시오. 대지 위에 건물이 있으나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에는 대지 소유자의 경우 대지는 '가. 토지' 항목에 적으시고, 건물 소유자의 경우 건물은 '나. 건물' 항목에 적으십시오.
3. ①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상속 중인 재산 등) '비고'란에 "사실상 소유"라고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및 관계를 적으며, ② 본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타인 소유인 경우(문중재산 등)에도 등록하고 '비고'란에 사실관계를 적으십시오.
4. '권리의 종류'란 작성방법
  -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사실상 소유권 또는 분양권을 적고, 미등기 권리는 '비고'란에 "등기 미완료"라고 표시하십시오.
5. '지목'란 작성방법
  -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연전·대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溜池)·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 등으로 표시하십시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6. '가액'란의 가액산정방법 및 작성방법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면적(㎡)으로 산정한 금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적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적으십시오.
  -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지료·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의 금액을 적으십시오.
  - 분양권의 경우 '가액'란에 총납부액을 적고, '비고'란에 총분양가액을 적으십시오.  
※ 최초 신고 시 분양권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격'란은 적지 마십시오.
7. 공동소유 토지인 경우
  - '면적', '가액'란에는 소유지분을 등록하고, '비고'란에는 전체지분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유", "합유" 등 공동 소유의 형태를 표시하십시오.
8.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는 경우
  - 매도한 경우: 매수자가 잔금은 완납하였더라도 본인이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 재산을 등록하십시오.
  - 매입한 경우: 중도금을 지급한 때부터 등록하며 '가액'란에 지급한 총금액을 적고, '비고'란에 계약관계와 총매입액을 적으십시오.  
※ 다만, 계약금만 주고받은 경우에는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9. 외국 소재 부동산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적고 비고란에 외화종류(달러, 유로, 파운드 등)를 적으십시오.
10.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 취득일자: 매입일, 상속일, 증여일 등
  - 취득경위: 목적, 방법(매입·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 소득원: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토지를 취득한 자금 출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나. 건물(소유권·전세권)

일련 번호	권리자	관계	권리의 종류	소재지	건물 면적 (㎡)	대지 면적 (㎡)	종류 및 용도	가액 (천원)	실거래가 격(천원)	형성과정	비고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기타: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권리의 종류'란에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전세권(임차권)·사실상 소유권 또는 분양권을 적으며, 미등기 권리는 '비고'란에 "등기 미완료"라고 표시하십시오.
3. ①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상속 중인 재산 등) '비고'란에 "사실상 소유"라고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및 관계를 적으며, ② 본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타인 소유인 경우(문중재산 등)에도 등록하고 '비고'란에 사실관계를 적으십시오.
4. 면적은 대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제곱미터(㎡)로 환산하여 적으십시오(1평은 3.3㎡로 계산).
5. '종류 및 용도'란 작성방법
  - 종류: 일반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빌딩 등
  - 용도: 주택·상가·사무실·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 등
6. 가액산정방법 및 작성방법
  - ① 주택은 '가액'란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공동주택가격 및 개별주택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적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적으십시오.
  - ② 상가·빌딩·오피스텔, 그 밖의 건물은 '가액'란에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을 별도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적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적으십시오.
    - 대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면적(㎡)"으로 산정
      - ※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
    - 건물가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등) 중 최고가액"으로 산정
  - ③ 전세권, 임차권인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의 금액을 '가액'란에 적으십시오.
  - ④ 분양권의 경우 '가액'란에 총납부액을 적고, '비고'란에 총분양가액을 적으십시오.
    - ※ 최초 신고 시 분양권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격'란은 적지 마십시오.
7. 공동소유 건물인 경우 '면적', '가액'란에는 소유지분을 등록하고, '비고'란에는 전체지분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유", "합유" 등 공동소유의 형태를 표시하십시오.
8.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는 경우
  - 매도한 경우: 매수자가 잔금을 완납하였다도 본인이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 재산을 등록하십시오.
  - 매입한 경우: 중도금을 지급한 때부터 등록하며, '가액'란에 지급한 총금액을 적고, '비고'란에 계약관계와 총매입액을 적으십시오.
    - ※ 다만, 계약금만 주고받은 경우에는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9. 무허가건물의 경우
  - 허가나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등록해야 하며, '가액'란에는 실매입액이나 사실상 거래가액을 적고, '비고'란에 "무허가건물"이라고 적으십시오.
10. 주택·상가 등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또는 임대보증금 등은 "10. 채무" 항목에 적으십시오.
11. 콘도미니엄은 부동산 소유권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도 [부동산(건물)]에 신고하지 말고 [회원권]에 신고하여야 하며, 면적은 비고란에 적으십시오.
12. 외국 소재 부동산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적고 비고란에 외화종류(달러, 유로, 파운드 등)를 적으십시오.
13.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 취득일자: 매입일, 상속일, 증여일 등
  - 취득경위: 목적, 방법(매입·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 소득원: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토지를 취득한 자금 출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

#### 4.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일련 번호	권리자	관계	권리의 종류	권리의 명세	가액 (천원)	실거래가격 (천원)	형성과정	비고

####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권리의 종류'란에는 광업권·어업권 및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권 또는 저당권 등으로 적으십시오.
3. '권리의 명세'란 **작성방법**
  - ① 광업권·어업권: 광물의 종류 또는 어업면허의 종류, 소재지, 존속기간 등을 적으십시오.
  - ② 자동차: 차명·제작연도·배기량·차량등록번호 등을 적으십시오.
  - ③ 건설기계: 기종명·제작회사·제작연도·건설기계등록번호 등을 적으십시오.
  - ④ 선박: 종류·용도·선박명·총톤수·건조연도·선박등록번호 등을 적으십시오.
  - ⑤ 항공기: 기종·형식·제작자·제작연도 등을 적으십시오.
4. 가액산정방법 및 작성방법
  - ① 광업권, 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는 '가액'란에 「지방세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나 「광업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의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적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적으십시오.
  - ②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 동산에 관한 권리는 '가액'란에 다음의 평가액(이하 "평가액"이라 한다)으로 등록하십시오. 이 때 가액은 번호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다만, 평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실거래가격을 적으십시오.
    - 자동차: ① 자동차보험의 차량기준가액 ② 「지방세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건설기계: ① 「지방세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선박: ① 선박보험상 선박가액 ② 「지방세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항공기: ① 「지방세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비고'란에 가액산정방법 기재(예: 자동차보험상 차량기준가액, 시가표준액, 실거래가격)
5. 권리를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지분을 적고 "공유", "합유" 등 공동소유의 형태를 표시하십시오.
6.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 5. 현금(수표 포함)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보유액(천원)	형성과정	비고

####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소유자별로 합계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며, 현금과 수표는 합산하십시오.
3.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현금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4. '비고'란에는 현금을 보유하게 된 사유를 적으십시오.

6. 예금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예탁 기관	예금의 종류	계좌번호	개설일	만기일	보유액 (천원)	형성과정	비고

작성방법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 소유자별로 예금의 합계액(「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포함)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등록대상자의 모든 계좌를 등록하되,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은 별도의 항목에 등록하십시오.  
※ 계좌별 1천만원 이상이 아닙니다.
- ‘예금의 종류’란에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예금 및 양도성예금증서(CD), 저축성이 가미된 보험(100퍼센트 보장성보험만 제외)·수익증권(펀드 등)·금융투자기관에 예탁한 투자자에탁금(파생상품위탁증거금 포함)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등록하십시오.  
※ 사모펀드의 경우 ‘예탁기관’란에 ‘자산운용사’, ‘예금의 종류’란에 ‘펀드명’, ‘비고’란에 ‘사모펀드유형’(예 : 전문투자형 또는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을 적으십시오.
- ‘보유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적립된 금액 또는 평가금액을 적고, ‘비고’란에는 "만기계약금액, 동창회비, 친목회비, 문중회비" 등 특이사항을 적으십시오.
- 파생상품증거금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파생상품거래의 대상물, 계약금액, 최종거래일 등 권리·의무사항을 간략히 적으십시오.
- 외화예금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적고 ‘비고’란에 외화종류(달러, 유로, 파운드 등)를 적으십시오.
-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예금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7.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예탁 기관	예금의 종류	계좌번호	개설일	만기일	보유액 (천원)	형성과정	비고

작성방법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 ‘예금의 종류’란에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예금 및 양도성예금증서(CD), 저축성이 가미된 보험(100퍼센트 보장성보험만 제외)·수익증권(펀드 등)·금융투자기관에 예탁한 투자자에탁금(파생상품위탁증거금 포함)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등록하십시오.
- ‘보유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적립된 금액 또는 평가금액을 적고, ‘비고’란에는 해당 계좌가 수입용인지 지출용인지 적으십시오.
-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예금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8. 증권(주식·국채·공채·회사채·백지신탁·주식매수선택권 등)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증권의 종류	예탁기관 (법인명)	발행인 (종목명)	행사가격	수량	가액 (천원)	형성과정	비고
				계좌번호 (법인등록 번호)	종목코드	행사기간				
			비상장주식 (법 제4조제3항 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에 한함)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취득일자: ·취득경위: ·기타:	

작성방법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 소유자별 증권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등록대상자의 모든 계좌의 증권을 등록하십시오.  
※ 주식매수선택권은 합계액에 관계없이 적으십시오.
- ‘증권의 종류’란 **작성방법**
  - **상장주식·비상장주식·국채·공채·회사채·백지신탁·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중 해당되는 항목을 적으십시오.
  - 금융투자상품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금은 주식으로 등록하고, 같은 조 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펀드 등)은 "6. 예금" 항목에 등록하십시오.
- ‘예탁기관(법인명)’ 및 ‘계좌번호(법인등록번호)’란: 증권 종류가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만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를 적으십시오.
- ‘발행인(종목명)’란: 증권 종류가 채권인 경우 발행인(예: 기획재정부, 경상북도, ○○철강)을 적고, 주식인 경우(주식매수선택권 포함) 종목명(예: ○○증권, ××전자)을 적으십시오.
- ‘종목코드’란: 증권 종류가 주식인 경우에만 적으십시오.
- ‘행사가격’(1주당)과 ‘행사기간’란(예: 2007. 1. 1. ~ 2008. 12. 31.): 증권 종류가 주식매수선택권인 경우에만 적으십시오.
- 가액산정방법
  - 원칙적으로 증권액의 가액산정은 액면가로 합니다.
  - 다만, 주식 중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은 재산등록 기준일 최종가격(재산등록 기준일 이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최종가격)으로 산정하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재산등록 기준일의 기준가(거래량가중평균가를 말하며, 재산등록 기준일 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기준가)로 산정하며, 최종가격 및 기준가의 기준일을 각각 ‘비고’란에 적으십시오.
  - 비상장주식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3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가액을 산정하십시오.  
 ※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비상장주식 실거래명세서를 제출하고, 평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명세서를 제출하십시오.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3제6항에 따라 해당 주식을 발행한 자가 회계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평가액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액면가로 신고하십시오.
  - 주식매수선택권은 지급받을 주식의 수량을 기재하되, 지급받을 주식의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가액’란에 현재시가를 적고,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가액’란에 **행사가격**을 적으십시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액은 총괄표상 총계에는 합산하지 마십시오.  
 ※ 주식선택권의 일종인 스톡어워드(stock award)도 등록대상입니다.
-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가액’란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계약 체결금액을 적고, ‘비고’란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 여부를 적으며, 다음 변동신고 시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된 사항을 등록하십시오.
-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증권의 종류’가 비상장주식(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에 한함) 및 주식매수선택권인 경우 해당 증권에 대한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 취득일자: 거래계약일, 주주명부 등재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등
  - 취득경위: 목적, 방법(매입·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 소득원: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증권을 취득한 자금 출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 9. 채권

일련 번호	채권자	관 계	채 권의 종류	채권액 (천원)	발생일	만기일	채 무자		형성과정	비고
							채무자명	주소		
			사인 간 채권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기타:	

####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채권자별로 채권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되, 반드시 건별로 구분하여 따로 적으십시오.
3. '채권의 종류'란에는 사인 간 채권, 기타로 적으십시오.
4. 주택이나 그 밖의 부동산에 설정한 부동산의 전세권(임차권)은 "3. 부동산" 항목에 적고, "9. 채권" 항목에는 적지 마십시오.
5. 사인 간 채권인 경우에는 '주소'란에 채무자의 전화번호를 적으십시오.
6.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채권의 종류'가 사인 간 채권인 경우에는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 취득일자: 계좌이체일, 차용증상 대어일 등
  - 취득경위: 채무자와의 관계, 발생사유 등
  - 소득원: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등 해당 채권의 자금 출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 10. 채무

일련 번호	채무자	관계	채 무의 종류	채무액 (천원)	계좌번호	발생일	만기일	채 권자		형성과정	비고
								채권자명	주소		
			사인 간 채무							·취득일자: ·취득경위: ·기타:	

####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채무자별로 채무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되, 반드시 건별로 구분하여 따로 적으십시오.
3. 채무의 종류
  - 금융채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 사인 간 채무
  - 건물(또는 토지) 임대 채무
4. 금융채무인 경우에는 계좌번호를 해당란에 적고, '채권자명'란에 "금융기관명"을 적으십시오.
5.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등은 "10. 채무" 항목에 적고, '비고'란에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등으로 표시하십시오.
6. 사인 간 채무인 경우에는 '주소'란에 채권자의 전화번호를 적으십시오.
7.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채무의 종류'가 사인 간 채무일 경우 취득일자·취득경위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 취득일자: 계좌이체일, 차용일 등
  - 취득경위: 채권자와의 관계, 채무의 사용목적 등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11.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종류	함량	보유중량 (g)	가액 (천원)	실거래가격 (천원)	형성과정	비고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소유자별로 금 및 백금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십시오.
3. '종류'란에는 금·백금의 종류 또는 금·백금 제품명을 기재하되, 보석류에 붙어 있는 금·백금은 "12. 보석류" 항목에 적고, "11. 금 및 백금" 항목에는 적지 마십시오.
4. '가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시장가격(매도가격)×보유중량(g)"을 적으십시오.  
○ 매매 등 거래를 통하여 구입한 재산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격'란에 **실매입액** 등을 적으십시오.
5.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금·백금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2. 보석류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종류	크기	색상	가액 (천원)	실거래가격 (천원)	형성과정	비고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소유자별로 품목당 보석류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십시오.
3. '종류'란에는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진주목걸이 등 보석의 종류 또는 보석제품의 종류를 적으십시오.
4. '가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전문가 등의 평가액을 기재하되, 평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실거래가격"을 해당란에 적으십시오.  
○ 매매 등 거래를 통하여 구입한 재산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격'란에 **실매입액** 등을 적으십시오.  
○ '비고'란에는 평가액을 산정한 전문가·전문가집단의 이름 또는 상호명과 그 연락처 등을 적으십시오.
5.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보석류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 13. 골동품 및 예술품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종류	작품 명세				가액 (천원)	실거래가격 (천원)	형성과정	비고
				품명	크기 (cm)	작가	제작 연대				

####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골동품 또는 예술품의 품목당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십시오.
3. '종류'란에는 도자기·회화(동양화·서양화·유화·유채화·판화 등)·서예·공예·조각·수예·칠기 등 골동품 및 예술품의 종류를 적으십시오.
4. '품명'란에는 작품명과 작품의 특기사항을 적으십시오.
5. '크기'란에는 가로×세로×높이를 센티미터(cm)로 적으십시오.
6. '가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전문가 등의 평가액을 기재하되, 평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실거래가  
격"을 해당란에 적으십시오.
  - 매매 등 거래를 통하여 구입한 재산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격'란에 **실매입액** 등을 적으십시오.
  - '비고'란에는 평가액을 산정한 전문가·전문가집단의 이름 또는 상호명과 그 연락처 등을 적으십시오.
7.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골동품·예술품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  
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 14. 회원권

일련 번호	소유자	관 계	종류	발행인	회원권번호	소재지	가액 (천원)	실거래가격 (천원)	형성과정	비고

####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골프·헬스·콘도미니엄 등 회원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회원권당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십시오.
3. '소재지'란에는 회원권이 있는 곳(등기가 되어 있는 곳)을 적으십시오.
4. 회원권은 취득가액을 '가액'란에 기재하되, 골프회원권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과 실거래가  
격 중 높은 금액을 적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적으십시오.
5.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회원권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  
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5. 지식재산권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종류	권리의 명세	소득금액 (천원)	형성과정	비고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소유자별로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등록하십시오.
3. '종류'란에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 등을 적으십시오.
4. '권리의 명세'란에는 발명(고안)의 명칭 및 등록번호, 저작물의 종류, 권리의 존속기간 등 지식재산권의 종류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적으십시오.
5. '소득금액'란에는 지식재산권으로 인하여 생긴 연간소득금액을 적고, 소득원인행위 등을 '비고'란에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6.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취득일자·취득경위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6.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일련 번호	출자자	관계	회사명	대표자	자본금	출자가액	회사연간	형성과정	비고
			소재지	영업종류	설립일	출자지분	매출액(천원)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기타: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출자가액'란에는 출자한 금액을, '출자지분'란에는 총자본금에 대한 그 지분비율을 적으십시오.
3. '회사연간매출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이전 최근 사업연도의 그 회사 결산서상의 연간매출액을 적으십시오.
4.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 취득일자: 출자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재일 등
  - 취득경위: 회사와의 관계, 출자목적 등
  - 소득원: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출자지분의 자금 출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17.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일련 번호	출연자	관계	출연재산 (천원)	보유직위	법인명칭	대표자	형성과정	비고
					소재지	목적사업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비영리법인이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그 밖에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말합니다.
3. '출연재산'란에는 출연금액 또는 출연재산을 적으십시오.
4. '보유직위'란에는 등록의무자가 비영리법인에서 보유하는 직위와 담당직무를 적으십시오.
5.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출연재산의 출연일자·출연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 비상장주식 실거래명세서

### 1. 거래 기본정보

일련 번호	종목명	소유자	관계	매매계약일	매매수량	1주당 매매가액 (천원)	제3자 거래여부	비고
							[   ]	
							[   ]	

### 2. 기업 일반정보

법인명		발행주식총수	
법인등록번호		1주당 액면가(원)	

첨부서류      국세 또는 지방세 과세신고자료 1부

### 작성 방법

1. 본 서식은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작성하십시오.
2. 등록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별로 작성하십시오.
  - 이 때 이해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동법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동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신고사항의 고지거부를 허가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3. '종목명'란: 해당 비상장주식의 종목명(예: ○○증권, ××전자)을 적으십시오.
4. '매매계약일'란: 재산등록 기준일 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이루어진 매매(매도 또는 매입)에 한하며, 둘 이상의 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매매계약일을 적으십시오.
5. '1주당 매매가액'란: 매매로 인해 발생한 국세 또는 지방세 신고시의 1주당 매매가액(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정한 가액)을 적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과세신고자료를 첨부하십시오.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1주당 매매가액(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정한 가액)이 1주당 액면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를 적고, '비고'란에 액면가임을 기재하십시오.
6. '제3자 거래여부'란: 등록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상호 간인 제3자와 매매거래를 한 경우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7. '발행주식총수'란: 매매계약일 현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으십시오.

## 비상장주식 평가명세서

<b>1. 평가대상 기업 일반정보</b>			
법인명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① 발행주식총수	
사업개시일		1주당 액면가(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표시)

- ④ 현재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 ]
- ⑤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4년 미만의 법인, 휴업·폐업 중인 법인 [ ]

<b>2. 평가대상 기업 재무정보</b>			
② 자산총액			
③ 부채총액			
④ 순자산가액(②-③)			
	최근 사업연도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직전 사업연도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직전전 사업연도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⑤ 당기순이익 또는 환산 당기순이익			
⑥ 발행주식총수			
⑦ 1주당 당기순이익 (각 사업연도별 ⑤÷⑥)	⑧	⑨	⑩

<b>3.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액</b>			
⑪ 1주당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의 가중평균액(⑧×3/6+⑨×2/6+⑩×1/6)			
⑫ 1주당 당기순이익가치 (⑪÷「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 조에 따른 이자율)			
⑬ 1주당 순자산가치(④÷①)			
⑭ 1주당 평가액(⑫×3/5+⑬×2/5)		비고	

첨부서류    별지 제1호의4서식(공직자 재산신고용 기업정보 확인서) 1부

### 작성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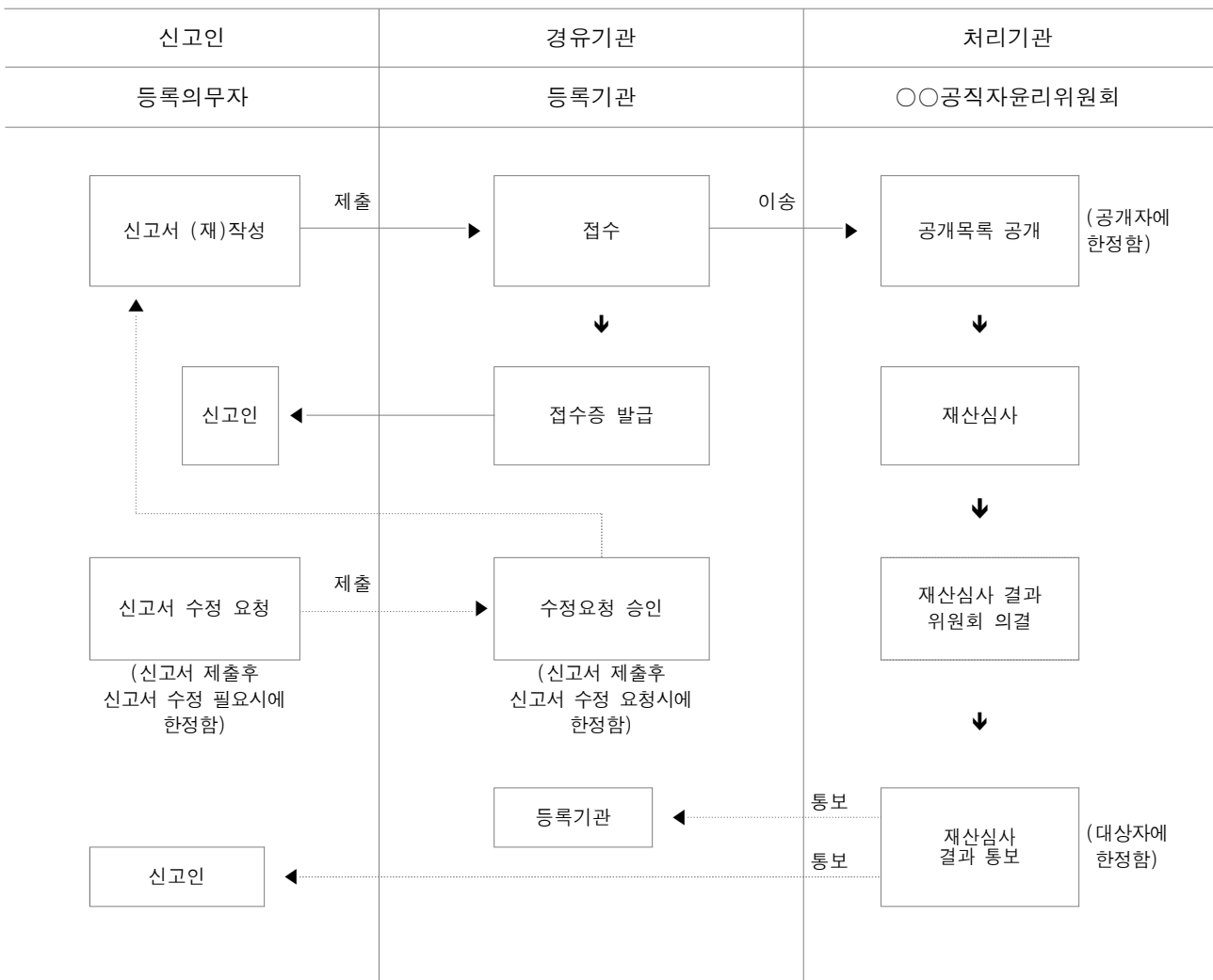
1. 본 서식은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평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작성하십시오.
2. 발행주식총수(①):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으십시오.
3. 자산총액(②):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자산총액을 적으십시오.
4. 부채총액(③):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부채총액을 적으십시오.
5. 당기순이익(⑤):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적으십시오. 다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월수는 태양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합니다.
  - '최근 사업연도'란 재산등록 기준일을 기준으로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사업연도를 의미합니다.
6. 발행주식총수(⑥):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각각 적으십시오.
7. 1주당 당기순이익(⑦): 최근 3개 사업연도별 ⑤란의 금액을 ⑥란의 총수로 나눈 금액을 적으십시오.
8. 1주당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의 가중평균액(⑪): {(⑧×3)+(⑨×2)+(⑩×1)}÷6로 산출된 가액을 적으십시오. 다만,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0으로 적으십시오.
9. 1주당 당기순이익가치(⑫): ⑪란의 금액을 10%(「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이자율)로 나눈 금액을 적으십시오.
10. 1주당 순자산가치(⑬): 순자산가액(④)을 발행주식총수(①)로 나눈 금액을 적으십시오.
11. 1주당 평가액(⑭): {(⑫×3)+(⑬×2)}÷5로 산출된 금액을 적으십시오. 다만, 1주당 평가액(⑭)이 1주당 순자산가치(⑬)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적으십시오. (④~⑥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⑬란의 금액을 그대로 적으십시오.)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1주당 평가액(⑭)이 1주당 액면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를 적고, '비고'란에 액면가임을 기재하십시오.





업무 처리절차

이 신고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1. 친족사항(등록의무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일련 번호	성명	관계	주민 등록번호	주소	고지 거부	등록 제외	등록 대상	직업	변동 사유	거주형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계존속(부모) 중 사망 등 등록제외 대상인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 [ ]모

※ 배우자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혼 [ ]이혼 [ ]사별

※ 자녀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대상 자녀 없음

작성방법

- 출생·사망·결혼·이혼·입양 등으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신분상 변동이 있거나 부양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적으십시오.
- 외국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십시오.
- ‘고지거부’란: 「공직자윤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직계존속·직계비속의 경우에는 "√" 표시를 하십시오.  
※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3년마다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등록제외’란: 이미 신고한 친족 중 사망한 사람 또는 결혼한 딸,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 "√" 표시를 하십시오.
- ‘등록대상’란: 등록제외가 아닌 배우자, 등록제외나 고지거부가 아닌 직계존속·직계비속은 "√" 표시를 하십시오.
- ‘직업’란에는 직장명·직위, 학교명·학년 등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 ‘변동사유’란에는 친족사항의 변동사유를 적으십시오.(예: 출생, 사망, 이혼 등)
- ‘거주형태’란: 주소지에의 거주형태(자가, 전월세, 기숙사, 관사, 친척집 등)를 적으십시오.

## 2. 재산변동신고 총괄표

※ 뒤에 나오는 재산항목별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하십시오.

재산항목	관계	권리자	권리 종류	종전 가액	변동액		현재 가액	형성과정	변동 사유
					증가액 (실거래가액)	감소액 (실거래가액)			
▶ 토지(소유권·지상권·전세권)(소계)									
					( )	( )		취득(상실)일자: 취득(상실)경위: 소득원(사용처): 기타:	
▶ 건물(소유권·전세권)(소계)									
					( )	( )		취득(상실)일자: 취득(상실)경위: 소득원(사용처): 기타: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 )	( )			
▶ 현금(수표 포함)(소계)									
▶ 예금(소계)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소계)									
▶ 증권(주식·국채·공채·회사채·백지신탁·주식매수 선택권 등)(소계)									
			비상장주식 (법 제4조제3 항제7호에 다른 그 외의 주식에 한함)					취득(상실)일자: 취득(상실)경위: 소득원(사용처): 기타:	
			주식매수 선택권					취득(상실)일자: 취득(상실)경위: 기타:	
▶ 채권(소계)									
			사인 간 채권					취득(상실)일자: 취득(상실)경위: 소득원(사용처): 기타:	
▶ 채무(소계)									
			사인 간 채무					취득(상실)일자: 취득(상실)경위: 소득원: 기타:	
▶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소계)									
					( )	( )			

재산항목	관계	권리자	권리 종류	종전 가액	변동액		현재 가액	형성과정	변동 사유
					증가액 (실거래가액)	감소액 (실거래가액)			
▶ 보석류(소계)									
					( )	( )			
▶ 골동품 및 예술품(소계)									
					( )	( )			
▶ 회원권(소계)									
					( )	( )			
▶ 지식재산권									
▶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소계)									
								취득(상실)일자: 취득(상실)경위: 소득원(사용처): 기타: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 사항									
총계									증감액: (가액변동: )

작성방법

1. 재산항목

- 재산종류별로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되, 다음의 권리명세에 대한 변동사항을 적으십시오.
- 토지: 소재지·면적 등을 적으십시오(임야·전·답·대지·잡종지 등).
- 건물: 소재지·면적 등을 적으십시오(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상가·빌딩·오피스텔·사무실 등).  
※ 미입주 분양아파트도 적으십시오.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4.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의 작성방법 참조
- 현금(수표 포함)
- 예금: 개인별·예탁기관별로 예탁기관명·계좌번호 등을 적으십시오(파생상품증거금 포함).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개인별·예탁기관별로 예탁기관명·계좌번호 등을 적으십시오.
- 증권: 예탁기관·종목명·보유량 등을 적으십시오[예: ○○증권 ○○전자(보유량 100주)].
- 채권: 채무자와 연락처(주소·전화번호 등)를 적으십시오.
- 채무: 금융기관 채무는 은행명·계좌번호를, 사인 간 채무는 채권자와 연락처를, 건물임대 채무는 물건 주소를 적으십시오.
- 금·백금: 종류·함량·중량 등을 적으십시오.
- 보석류: 보석의 종류·크기·색상 등을 적으십시오.
- 골동품·예술품: 종류·크기·작가 및 제작연대 등을 적으십시오.
- 회원권: 발행인·회원권번호 등을 적으십시오.
- 지식재산권: 명칭·등록번호·저작물의 종류 등 구체적 권리명세를 적으십시오.
-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출자지분: 회사명, 출자가액 및 지분비율의 변동사항,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이전 최근 사업연도의 그 회사 결산서상의 연간매출액의 증감사항 등을 적으십시오.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법인명, 출연재산, 보유 직위 등의 변동사항을 적으십시오.

2. 관계 및 권리자

- 관계는 본인과의 관계를 적으십시오.
- 권리자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성명을 적으십시오.
-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직계존속·직계비속도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 사항'란에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한 후 '변동사유'란에 고지거부 사유 및 고지거부 허가일 등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예: 독립생계유지, 2007. 3. 3.).
- 이미 신고한 신고대상자 중 사망한 사람 또는 결혼한 딸이 있는 경우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 사항'란에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한 후 '변동사유'란에 등록제외 사유, 등록제외일 등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예: 사망, 2007. 5. 3.).

3. 권리종류

- 부동산(토지·건물): 소유권·지상권·전세(임차권)·사실상 소유권·분양권 등
- 부동산에 준용하는 권리: 자동차·광업권·어업권·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
- 현금
- 예금: 예금의 종류를 적으십시오(예: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보험, 공제, 수익증권 등).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예금의 종류를 적으십시오.
- 증권: 상장주식·비상장주식·국채·공채·회사채·백지신탁·주식매수선택권 등
- 채권: 사인 간 채권 등
- 채무: 금융기관 채무, 사인 간 채무, 건물임대 채무 등
- 금·백금: 금·백금의 종류 또는 제품명
- 보석류: 보석의 종류(다이아몬드 등) 또는 제품명
- 골동품 및 예술품: 도자기·서양화·동양화·서예·공예·수예·조각·철기 등
- 회원권: 골프회원권, 헬스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
- 지식재산권: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 등
-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4. 종전가액: 종전 신고시점의 재산가액을 적으십시오.

5. 변동액: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의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 ) 안에는 실거래가격을 적으십시오.

6. 현재가액: 종전가액에서 변동액을 반영한 금액을 적으십시오.

7. 형성과정

- 재산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부동산(토지·건물), 증권 중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 및 주식매수선택권, 사인 간 채권, 사인 간 채무,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에 대하여 취득(상실)일자·취득(상실)경위·소득원(사용처)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8. 변동사유

- 매도·매입·상속·증여·유증·수용·가액변동 등 재산증감 변동원인을 적고, 재산의 증감일자·증감경위·소득원 등 소명할 필요가 있을 경우 내용을 '변동사유'란에 적거나 소명자료를 첨부하십시오.
- 예금 및 증권의 '변동사유'란에는 총변동액의 변동원인을 기재(개인별 변동사유 기재는 생략)하되 개인별·계좌번호별로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적으십시오.

9. 총계

- 재산항목별 가액 또는 실거래가격을 합산하여 기재하되, 증권 중 주식매수선택권, 지식재산권,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총계에 반영하지 마십시오.

### 3. 부동산

#### 가. 토지(소유권·지상권·전세권)

일련 번호	권리자	관계	권리의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				가액 (천원)				실거래 가격 (천원)	형성과정	변동 사유	
						종 전	증 가	감 소	현 재	종 전	증 가	감 소	현 재				

#### 작성방법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 ① 매매·상속·증여 등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② 지번분할·합병 등으로 면적에 변동이 있는 경우, ③ 부동산의 공시가격 변동으로 평가액이 증감된 경우에 신고하십시오.
- 대지 위에 건물이 있으며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 '가. 토지' 항목이 아닌 '나. 건물' 항목에 적으십시오. 대지 위에 건물이 있으나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에는 대지 소유자의 경우 대지는 '가. 토지' 항목에 적으시고, 건물 소유자의 경우 건물은 '나. 건물' 항목에 적으십시오.
- ①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상속 중인 재산 등) '변동사유'란에 "사실상 소유"라고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및 관계를 적으며, ② 본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타인 소유인 경우(문중재산 등)에도 등록하고 '변동사유'란에 사실관계를 적으십시오.
- '권리의 종류'란 작성방법
  -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사실상 소유권 또는 분양권을 적고, 미등기 권리는 '변동사유'란에 "등기 미완료"라고 적으십시오.
- '지목'란 작성방법
  -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 등으로 적으십시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 '가액'란의 가액산정방법 및 작성방법
  - 매매·상속·증여 등으로 부동산 소유권 등이 변동된 경우
    -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실거래가격(실매입액)을 기재하되,
      - 증여·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면적(㎡)을 적으십시오.
    - 분양권의 경우: '가액'란에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을 적고, '실거래가격'란은 분양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만 적으십시오.
    -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의 경우: "계약서상의 지료·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 금액"을 적으십시오.
    - 매도·수용·증여 등으로 소유권 등이 이전된 경우: '가액'란에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적고, '실거래가격'란에 실매도액 또는 보상액 등을 적으십시오.
  - 소유권 변동 없이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으로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 종전가액을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공시가격을 확인하여 증감을 신고하십시오.
    - 종전가액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높을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면적(㎡)을 적고,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기존 실거래가격을 적으십시오.
- '변동사유'란에는 매도·매입·상속·증여·유증·수용·가액변동 등 권리증감 변동사유를 적으십시오.
- 공동소유 토지인 경우 '면적', '가액'란에는 소유지분을 등록하고, '변동사유'란에는 전체지분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유", "합유" 등 공동소유의 형태를 표시하십시오.
-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는 경우
  - 매도한 경우: 매수자가 잔금은 완납하였더라도 본인이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 재산을 등록하십시오.
  - 매입한 경우: 중도금을 지급한 때부터 등록하며, '현재가액'란에 지급한 총금액을 적고, '변동사유'란에 계약관계와 총매입액을 적으십시오.
- ※ 다만, 계약금만 주고받은 경우에는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 소명자료(법 제6조제8항)
  - 변동일자·변동경위·소득원, 그 밖의 재산증감 원인을 '변동사유'란에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 외국 소재 부동산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적고 '변동사유'란에 외화종류(달러, 유로, 파운드 등)를 적으십시오.
-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취득(상실)일자·취득(상실)경위·소득원(사용처) 등 해당 재산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 취득(상실)일자: 매입일, 매도일, 상속일, 증여일 등
  - 취득(상실)경위: 목적(취득매도 목적 등), 방법(매입매도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매도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 소득원(사용처):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토지를 취득한 자금 출처, 매도한 경우 매도금 사용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나. 건물(소유권·전세권)

일련 번호	권리자	관계	권리 의 종류	소재지	종류 및 용도	대지 면적 (㎡)	건물면적(㎡)				가액(천원)				실거래 가격 (천원)	형성과정	변동 사유
							총 전	증 가	감 소	현 재	총 전	증 가	감 소	현 재			
															취득(상실)일자: 취득(상실)경위: 소득원(사용처): 기타:		

**작성방법**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 ① 매매·상속·증여 등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② 증축 등으로 면적이 변동된 경우, ③ 부동산의 공시가격 등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도 신고하십시오.
- ①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상속 중인 재산 등) '변동사유'란에 "사실상 소유"라고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및 관계를 적으며, ② 본인명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타인 소유인 경우(문중재산 등)에도 등록하고 '변동사유'란에 사실관계를 적으십시오.
- '권리의 종류'란 작성방법
  -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사실상 소유권 또는 분양권으로 적고, 미등기 권리는 '변동사유'란에 "등기 미완료"라고 표시하십시오.
- 면적은 대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제곱미터(㎡)로 환산하여 해당란에 적으십시오(1평은 3.3㎡로 계산).
- '종류 및 용도'란
  - 종류: 일반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빌딩 등
  - 용도: 주택·상가·사무실·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 등
- 가액산정방법 및 작성방법
  - ① 매매·상속·증여 등 부동산 소유권 등이 변동된 경우
    -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실거래가격(실매입액)을 적으십시오.
    - 다만, 증여·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공시한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을 '가액'란에 적으십시오.
      - 상가·빌딩·오피스텔, 그 밖의 부동산은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여 '가액'란에 적으십시오.
      - 대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표준공시지가의 적용)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면적(㎡)"으로 산정
      - 건물가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등) 중 최고가액"으로 산정
    - 분양권의 경우: '가액'란에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을 적고, '실거래가격'란은 분양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만 적으십시오.
    -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의 경우: "계약서상의 지료·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의 금액"을 적으십시오.
    - 매도·수용·증여 등으로 소유권 등이 이전된 경우: '가액'란에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적고, '실거래가격'란에 **실매도액** 또는 보상액 등을 적으십시오.
  - ② 소유권 변동 없이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으로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 종전가액을 "공시가격"로 신고한 경우: **공시가격**을 확인하여 증감을 신고하십시오.
    - 종전가액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높을 때에는 공시가격을 적고,**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기존 실거래가격을 적으십시오.**
- '변동사유'란에는 매도·매입·상속·증여·유증·수용·가액변동 등 권리증감 변동사유를 적으십시오.
- 공동소유 건물인 경우 '면적', '가액'란에는 소유지분을 등록하고, '변동사유'란에는 전체지분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유", "합유" 등 **공동소유의 형태**를 표시하십시오.
-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는 경우
  - 매도한 경우: **매수자가** 잔금은 완납하였더라도 **본인이**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 재산을 등록하십시오.
  - 매입한 경우: 중도금을 지급한 때부터 등록하며, '**현재가액**'란에 **지급한 총금액**을 적고, '**변동사유**'란에 **계약관계와 총매입액**을 적으십시오.

※ 다만, **계약금만 주고받은 경우에는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 무허가건물의 경우에는 허가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해야 하며, '가액'란에는 **실매입액**이나 사실상 거래가액을 적으십시오.
- 주택·상가 등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또는 임대보증금 등은 "10. 채무" 항목에 적으십시오.
- 외국 소재 부동산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적고 '**변동사유**'란에 외화종류(달러, 유로, 파운드 등)를 적으십시오.
- 소명자료(법 제6조제8항)
  - 변동일자·변동경위·소득원, 그 밖의 재산증감 원인을 '변동사유'란에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취득(상실)일자·취득(상실)경위·소득원(사용처)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 취득(상실)일자: 매입일, 매도일, 상속일, 증여일 등
  - 취득(상실)경위: 목적(취득·매도 목적 등), 방법(매입·매도·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매도·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 소득원(사용처):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토지를 취득한 자금 출처, 매도한 경우 매도금 사용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4.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일련 번호	권리자	관계	권리의 종류	권리의 명세	가액(천원)				실거래가 액(천원)	형성과정	변동 사유
					종전	증가	감소	현재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권리의 종류'란에는 광업권·어업권 및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권 또는 지당권 등으로 적으십시오.
3. '권리의 명세'란 **작성방법**
  - ① 광업권·어업권: 광물의 종류 또는 어업면허의 종류, 소재지, 존속기간 등을 적으십시오.
  - ② 자동차: 차명·제작연도·배기량·차량등록번호 등을 적으십시오.
  - ③ 건설기계: 기종 명·제조회사·제작연도·건설기계등록번호 등을 적으십시오.
  - ④ 선박: 종류·용도·선박명·총톤수·건조연도·선박등록번호 등을 적으십시오.
  - ⑤ 항공기: 기종·형식·제작자·제작연도 등을 적으십시오.
4. 가액산정방법 및 작성방법
  - ① 매매·상속·증여 등으로 소유권 등이 변동된 경우
    - 매입한 경우: 실거래가격(실매입액)을 적으십시오.
    - 매도한 경우: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적고 "실매도액"을 '실거래가격'란에 적으십시오.
    - 증여·상속 등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다음의 평가액(이하 "평가액"이라 한다)으로 등록하십시오. 이 때 가액은 번호 순서 대로 적용합니다.
      - 광업권·어업권: ① 「지방세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② 「**광업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의 평가액
      - 자동차: ① 자동차보험의 차량기준가액 ② 「지방세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건설기계: ① 「지방세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선박: ① 선박보험상 선박가액 ② 「지방세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항공기: ① 「지방세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② 미거래로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 광업권·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 종전가액을 평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평가액을 확인하여 증감을 적으십시오.
      - 종전가액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평가액이 실거래가격보다 높을 때에는 평가액을 적고,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평가액이 실거래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기존 실거래가격을 적으십시오.
    -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 위의 해당하는 평가액을 적으십시오.
    - 가액산정방법을 참고하여,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평가액을 확인하고 증감을 신고하십시오.
5. '변동사유'란에는 매도·매입·상속·증여·유증·존속기간 만료·가액변동 등 권리증감 변동사유를 적으십시오.
6. 권리를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변동사유'란에 "공유", "합유" 등 공동소유의 형태를 표시하고, 지분을 적으십시오.
7. 소명자료(법 제6조제8항)
  - 변동일자·변동경위·소득원, 그 밖의 재산증감 원인을 '변동사유'란에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8.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 5. 현금(수표 포함)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보유액(천원)				형성과정	변동사유
			종전	증가	감소	현재		

####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현금과 수표는 합산하십시오.
3. 종전 신고금액이 증가(신규 포함)하거나 감소한 경우에 그 금액을 '증가'란이나 '감소'란 및 '현재'란에 적고, 전년도까지 신고된 현금총액은 '종전'란에 적으십시오.
4. 종전 신고 시에는 소유자별 합계 1천만원 미만이어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증가하여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증가'란 및 '현재'란에 그 총금액을 적으십시오.
5.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현금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6. '변동사유'란에는 증감변동사유를 적고, 증감 원인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으십시오.

### 6. 예금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예탁기관	계좌번호		보유액 (천원)				형성과정	특기 사항	
			예금의 종류	개설일	만기일	종전	증가	감소	현재			

####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종전 신고예금액이 증가(신규 포함)하거나 감소한 경우에 그 금액을 '증가보유액'란 또는 '감소보유액'란 및 '현재보유액'란에 적고, 전년도까지 신고된 예금총액은 '종전보유액'란에 적으십시오.  
\* 만기 또는 계약해지의 경우 '증가보유액'란에는 이자 등 증가액을, '감소보유액'란에는 만기인출금액 또는 해지금액을 적고, 현재보유액이 "0"이 되도록 합니다.
3. '예금의 종류'란에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예금 및 양도성예금증서(CD), 저축성이 가미된 보험(100퍼센트 보장성보험만 제외)·수익증권(펀드 등)·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한 투자자예탁금(파생상품위탁증거금 포함)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등록하십시오.  
※ 사모펀드의 경우 '예탁기관'란에 '자산운용사', '예금의 종류'란에 '펀드명', '특기사항'란에 '사모펀드유형'(예 : 전문투자형 또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을 적으십시오.
4. 종전 신고 시에는 소유자별 예금총액(「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포함)이 1천만원 미만이어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증가하여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예금총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모든 계좌의 증가 및 현재보유액을 적되,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은 별도의 항목에 등록하십시오.
5. '보유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적립된 금액 또는 평가금액을 적고, '특기사항'란에는 "만기계약금액, 동창회비, 친목회비, 문중회비 등" 특이사항을 적으십시오.
6. 파생상품위탁증거금의 경우에는 '특기사항'란에 파생상품거래의 대상물, 계약금액, 최종거래일 등 권리·의무사항을 간략히 적으십시오.
7. 계좌별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는 적지 않고 "2. 재산변동신고 총괄표"의 예금 항목 '소계'란에 전체적인 증감액의 변동사유를 적으십시오.
8. 외화예금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적고 '특기사항'란에 외화종류(달러, 유로, 파운드 등)를 적으십시오.
9.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예금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7.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예탁기관	계좌번호		보유액 (천원)				형성과정	특기 사항
			예금의 종류	개설일	만기일	종전	증가	감소	현재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종전 신고예금액이 증가(신규 포함)하거나 감소한 경우에 그 금액을 '증가보유액'란 또는 '감소보유액'란 및 '현재보유액'란에 적고, 전년도까지 신고된 예금총액은 '종전보유액'란에 적으십시오.  
\* 만기 또는 계약해지의 경우 '증가보유액'란에는 이자 등 증가액을, '감소보유액'란에는 만기인출금액 또는 해지금액을 적고, 현재보유액이 "0"이 되도록 합니다.
3. '예금의 종류'란에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보통예금, 정기에금, 정기적금, 저축예금 및 양도성예금증서(CD), 저축성이 가미된 보험(100퍼센트 보장성보험만 제외)·수익증권(펀드 등)·금융투자업자에 예탁한 투자자에탁금(파생상품위탁증거금 포함)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등록하십시오.
4. '특기사항'란에는 해당 계좌가 수입용인지 지출용인지 적으십시오.
5. 계좌별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는 적지 않고 "2. 재산변동신고 총괄표"의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항목 '소계'란에 전체적인 증감액의 변동사유를 적으십시오.
6.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예금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8. 증권(주식·국채·공채·회사채·백지신탁·주식매수선택권 등)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증권의 종류	예약 기관 (법인명)	발행인 (종목명)	행사 가격	수량				가액(천원)				형성과정	특기 사항
				계좌 번호 (법인등록 번호)	종목 코드	행사 기간	종 전	증 가	감 소	현 재	종 전	증 가	감 소	현 재		
			비상장주식 (법 제4조제3 항제7호에 다른 그 외의 주식에 한함)												·취득(상실)일자: ·취득(상실)경위: ·소득원(사용처): ·기타:	
			주식매수 선택권												·취득(상실)일자: ·취득(상실)경위: ·기타:	

작성방법특기사항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 소유자별로
  - 신규로 증권을 취득한 경우 ② 종전에 신고한 증권 계좌번호가 변경되거나 보유수량이 변동된 경우 ③ 종전에 신고한 주식의 종류 및 수량 변동 없이 주가의 변동만으로 가액만 변동된 경우에 등록하십시오.  
※ 공개자는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의5서식에 따른 주식변동사항 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
- 종전 신고 시에는 합계 1천만원 미만이어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증가하여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합계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모든 계좌의 수량 및 가액을 신고하십시오.
- '증권의 종류'란 **작성방법**
  - 상장주식·비상장주식·국채·공채·회사채·백지신탁·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중 해당되는 항목을 적으십시오.  
- 금융투자상품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금은 주식으로 등록하고, 같은 조 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펀드 등)은 "6. 예금" 항목에 등록하십시오.
- '예약기관(법인명)' 및 '계좌번호(법인등록번호)'란: 증권이 비비상장주식인 경우에만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를 적으십시오.
- '발행인(종목명)'란: 증권이 채권인 경우 발행인(예: 기획재정부, 경상북도, ○○철강)을 적고, 주식(주식매수선택권 포함)인 경우 종목명(예: ○○증권, ××전자)을 적으십시오.
- '종목코드'란: 증권이 비비상장주식인 경우에만 적으십시오.
- '행사가격'(1주당)과 '행사기간'란(예: 2007. 1. 1. ~ 2008. 12. 31.): 증권이 비비상장주식인 경우에만 적으십시오.
- 가액산정방법
  - 원칙적으로 증권이 비비상장주식인 경우 액면가로 합니다. 다만, 주식 중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최종가액(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이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최종가액)으로 산정하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거래량가중평균가)를 말하며, **재산등록 기준일** 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기준가)로 산정하며, 최종가액 및 기준가의 기준일을 각각 '변동사유'란에 적으십시오.
    - 비상장주식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3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가액을 산정하십시오.  
※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비상장주식 실거래명세서를 제출하고, 평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명세서를 제출하십시오.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3제6항에 따라 해당 주식을 발행한 자가 회계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평가액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액면가로 신고하십시오.
    - 주식매수선택권은 지급받을 주식의 수량을 기재하되, 지급받을 주식의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가액'란에 현재시가를 적고,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가액'란에 행사가격을 적으십시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액은 총괄표상 총계에는 합산하지 마십시오.  
※ 주식선택권의 일종인 스톡어워드(stock award)도 등록대상입니다.
- 전년도까지 신고된 증권이 비비상장주식인 경우 수량 및 가액은 '종전수량'란 및 '종전가액'란에 적으십시오.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게 된 경우에는 매도처리하고, 증권이 비비상장주식(비상장주식 등)을 달리하여 신규로 다시 등록하십시오.
- '현재가액'란은 현 수량에 제7호의 산정가격을 곱하여 적고, 증감액은 현재가액과 지난번에 신고한 종전가의 차액을 증가 또는 감소로 구분하여 적으십시오.
- 재산변동신고 기간중에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주식백지신탁 계약일이 속한 연도말 기준으로 신고하되, 증권이 비비상장주식인 경우 '특기사항'란에 신탁일자, 신탁회사를 적으십시오.
- 건별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는 적지 않고 "2. 재산변동신고 총괄표"의 증권 항목 '소계'란에 전체적인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를 적으십시오.
-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증권의 종류'가 비비상장주식(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에 한함) 및 주식매수선택권인 경우 해당 증권에 대한 취득(상실)일자·취득(상실)경위·소득원(사용처)(주식매수선택권은 제외)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 취득(상실)일자: 거래계약일, 주주명부 등재일, 매도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및 행사일 등
  - 취득(상실)경위: 목적(취득매도 목적 등), 방법(매입매도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매도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 소득원(사용처):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증권을 취득한 자금 출처, 매도한 경우 매도금 사용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9. 채권

일련 번호	채권자	관계	채권의 종류	채권액(천원)				발생일 만기일	채무자		형성과정	변동 사유
				종전	증가	감소	현재		채무자명	주소		
			사인 간 채권								취득(상실)일자: 취득(상실)경위: 소득원(사용처): 기타: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채권의 종류'란에는 사인 간 채권, 기타로 적으십시오.
3. 신규 채권이 발생하거나 종전에 신고한 채권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 신고하고, 전년도까지 신고된 채권의 총액은 '종전채권액'란에 적으십시오.
4. 종전 신고 시에는 소유자별 합계 1천만원 미만이어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증가하여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증가 채권액'란 및 '현재 채권액'란에 기재하여 등록하십시오.
5. 주택이나 그 밖의 부동산에 설정한 전세권(임차권) 등은 "3. 부동산" 항목에 적고, "9. 채권" 항목에는 적지 마십시오.
6. 사인 간 채권인 경우에는 '주소'란에 채무자의 전화번호를 적으십시오.
7.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채권의 종류'가 사인 간 채권인 경우에는 취득(상실)일자취득(상실)경위·소득원(사용처)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 취득(상실)일자: 계약이체일, 차용증상 대어일, 채권 환수일 등
  - 취득(상실)경위: 채무자와의 관계, 발생사유 등
  - 소득원(사용처):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등 해당 채권의 자금 출처, 채권을 환수한 경우 그 사용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8. '변동사유'란에는 증감 변동사유를 적으십시오.

10. 채무

일련 번호	채무자	관계	채무의 종류	채무액(천원)				계좌번호		채권자		형성과정	변동 사유
				종전	증가	감소	현재	발생일	만기일	채권자명	주소		
			사인 간 채무									취득(상실)일자: 취득(상실)경위: 소득원: 기타: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채무의 종류
  - 금융채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 사인 간 채무
  - 건물(또는 토지) 임대 채무
3. 종전 신고 시에는 소유자별 1천만원 미만이어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증가하여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증가 채무액'란 및 '현재 채무액'란에 기재하여 등록하십시오.
4. 전년도 신고된 채무액을 '종전 채무액'란에 적고, 현 보유채무액을 '현재 채무액'란에 적으십시오. 이 때 종전에 신고한 채무액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 채무액에서 종전 채무액을 감하여 그 증감액을 '증가 채무액'란 또는 '감소 채무액'란에 적으십시오.
5. 금융채무인 경우에는 계좌번호를 해당란에 적고, '채권자명'란에 "금융기관명"을 적으십시오.
6.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 등은 채무 항목에 적고, '변동사유'란에 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 등으로 표시하십시오.
7. 사인 간 채무인 경우에는 '주소'란에 채권자의 전화번호를 적으십시오.
8.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채무의 종류'가 사인 간 채무일 경우 취득(상실)일자취득(상실)경위·소득원(채무를 상환한 경우에 한함)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 취득(상실)일자: 계약이체일, 차용일, 채무 상환일 등
  - 취득(상실)경위: 채권자와의 관계, 채무의 사용목적 등
  - 소득원: 채무를 상환한 경우 상환금의 출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 11.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종류	함량	보유중량(g)				가액(천원)				실거래 가격 (천원)	형성과정	변동 사유
					종전	증가	감소	현재	종전	증가	감소	현재			

####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소유자별로 합계 500만원 이상의 금·백금을 새로 보유하거나(종전에 500만원 미만이어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증가된 경우 포함) 이미 등록된 금·백금이 감소되었을 경우에 등록하고, 전년도까지 등록된 보유량을 '종전 보유중량'란에 적으십시오.
3. '종류'란에는 금·백금의 종류 또는 금·백금의 제품명을 기재하되, 보석류에 붙어 있는 금·백금은 "12. 보석류" 항목에 적고, "11. 금 및 백금" 항목에는 적지 마십시오.
4. 같은 함량의 금 또는 백금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도 '증가 보유중량'란이나 '감소 보유중량'란 및 '현재 보유중량'란에 적으십시오.
5. 가액산정방법
  - 매매·상속·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 매입한 경우에는 **실매입액**을 적고, 매도한 경우에는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적고 '실거래가격'란에 **실매도액**을 적으십시오.
    - 증여·상속 등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시장가격[매도가액기준(/g)]을 확인하여 보유중량과 곱한 가액을 적으십시오.
  - 미거래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시장가격을 확인하여 증감을 적으십시오.
6. '변동사유'란에는 매입·매도·상속·증여·가액변동 등 증감원인을 적으십시오.
7.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금·백금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 12. 보석류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종류	크기	색상	가액(천원)				실거래가격 (천원)	형성과정	변동사유
						종전	증가	감소	현재			

####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를 새로 보유하거나, 이미 등록된 보석류가 감소된 경우에 등록하되, 거래 없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변동하지 않고 **종전가액**을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3. '종류'란에는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진주목걸이 등 보석의 종류 또는 보석제품의 종류를 적으십시오.
4. 가액산정방법
  - 매입 시에는 실거래가격(**실매입액** 등)을 적고, 매도 시에는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해당란에 기재하되 **실매도액** 등을 '실거래가격'란에 적으십시오.
  - 증여·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보석감정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을 등록합니다. 이 때 '변동사유'란에는 평가액을 산정한 전문가·전문가집단의 이름 또는 상호명과 그 연락처 등을 적으십시오.
5. 실거래가격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때 적으십시오.
6. '변동사유'란에는 매입·매도·상속·증여 등 증감원인을 적으십시오.
7.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보석류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 13. 골동품 및 예술품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종류	작품 명세				가액(천원)				실거래가격 (천원)	형성과정	변동 사유	
				품명	크기 (cm)	작가	제작 연대	종전	증가	감소	현재				

####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골동품 또는 예술품을 새로 보유하거나, 이미 등록된 골동품 또는 예술품이 변동된 경우에 신고하되, 거래 없이 계속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 변동하지 않고 **종전가액**을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3. '종류'란에는 도자기·회화(동양화·서양화·유화·수채화·판화 등)·서예·공예·조각·수예·철기 등 골동품 및 예술품의 종류를 적으십시오.
4. '품명'란에는 작품명과 작품의 특기사항을 적으십시오.
5. '크기'란에는 가로×세로×높이를 센티미터(cm)로 적으십시오.
6. 가액산정방법
  - 매입 시에는 실거래가격(**실매입액** 등)을 적고, 매도 시에는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기재하되 **실매도액** 등을 '실거래가격'란에 적으십시오.
  - 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화랑협회 등의 기관이나 전문감정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을 등록합니다. 이 때 '변동사유'란에는 평가액을 산정한 전문가·전문가집단의 이름 또는 상호명과 그 연락처 등을 적으십시오.
7. '변동사유'란에는 매입·매도·상속·증여 등 증감원인을 적으십시오.
8.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골동품·예술품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 14. 회원권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종류	발행인	회원권번호	소재지	가액(천원)				실거래 가격 (천원)	형성과정	변동 사유	
							종전	증가	감소	현재				

####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골프·헬스·콘도미니엄 등 회원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권당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회원권을 새로 보유하거나 이미 등록된 회원권이 변동된 경우에 등록하십시오.
3. 가액산정방법
  - 가. 회원권은 매입 시에는 실거래가격(취득가액)을 해당란에 적으십시오. 매도 시에는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해당란에 적고, **실매도액**을 '실거래가격'란에 적으십시오.
  - 나. 다만, 골프회원권의 경우
    - 매입·상속·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추가된 경우 '가액'란에 실거래가격(취득가액)을 기재하되, 다만, 증여·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으십시오.
    - 미거래 시에도 재산등록 기준일의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를 확인하여 가액을 변동하여 적으십시오. 다만, 이전 재산등록 시 신고서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한 경우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기준시가가 신고된 실거래가격보다 높을 때에는 기준시가를 신고하고,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기준시가가 신고된 실거래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기존 실거래가격을 유지합니다.
4. '소재지'란에는 회원권이 있는 곳을 적으십시오.
5. '변동사유'란에는 매입·매도·상속·증여·가액변동 등 증감 원인을 적으십시오.
6.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회원권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5. 지식재산권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종류	권리의 명세	소득금액 (천원)	형성과정	변동사유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소유자별로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을 새로 보유하거나 이미 등록된 지식재산권이 양도 등으로 변동된 경우 또는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 신고하십시오.
3. 종류에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 등을 적으십시오.
4. '권리의 명세'란에는 발명(고안)의 명칭 및 등록번호, 저작물의 종류, 권리의 존속기간 등 지식재산권의 종류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적으십시오.
5. '소득금액'란에는 지식재산권으로 인하여 생긴 연간소득금액을 적고, 소득원인행위 등을 '변동사유'란에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6. '변동사유'란에는 신규등록·매도·존속기간만료 등 권리의 변동사유를 적으십시오.
7.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취득일자·취득경위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6.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일련 번호	출자자	관계	회사명	대표자	자본금	변동사항				형성과정	변동 사유	
			소재지	영업종류	설립일	출자가액 (천원)		출자지분				회사연간매 출액(천원)
						종전	현재	종전	현재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새로 출자하거나 이미 등록된 회사의 출자가액·출자지분이나 매출액이 변동된 경우에 신고하십시오.
3. 자본금이 증감한 경우에는 매도처리하고, 신규로 다시 등록하십시오.
4. '출자가액'란에는 변동된 출자금액의 증감사항을 적고, '출자지분'란에는 변동된 출자가액과 자본금에 대한 그 지분비율의 증감사항을 적으십시오.
5. '회사연간매출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이전 최근 사업연도의 그 회사 결산서상의 연간매출액을 적고, 종전 신고대비 증감액을 ( ) 안에 함께 적으십시오. 감소 기재 시 감소(△)표시를 하십시오.
6. '변동사유'란에는 출자가액 및 출자지분의 증감변동원인행위를 적으십시오.
7. 출자지분 증감원인행위를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변동사유'란에 적으십시오.
8.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취득(상실)일자취득(상실)경위·소득원(사용처)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 취득(상실)일자: 출자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재일, 출자지분 회수일 등
  - 취득(상실)경위: 회사와의 관계, 출자회수 목적 등
  - 소득원(사용처):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출자지분의 자금 출처, 출자지분을 회수한 경우 그 사용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17.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일련 번호	출연자	관계	출연재산 (천원)	보유직위	법인명칭	대표자	형성과정	변동사유
					소재지	목적사업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비영리법인이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그 밖에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말합니다.
3. 새로 비영리법인에 출연하거나 이미 등록된 출연재산·보유직위·명칭·소재지·대표자·목적사업이 변동된 경우에 신고하십시오.
4. 출연재산은 변동된 출연재산의 명세를 적고, 종전 신고대비 증감액을 ( ) 안에 함께 적으십시오. '보유직위'란에는 등록의 무자가 비영리법인에서 보유하는 직위와 담당 직무를 적으십시오.
5. '변동사유'란에는 신규출연·출연금증가·보유직위변경 또는 비영리법인 목적사업변경 등 변동신고사유를 적으십시오.
6.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출연재산의 출연일자·출연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 기관 · 단체 현황표

(앞쪽)

기관 ·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설립근거	설립일
기관 · 단체 유형	감독기관
주요업무	

구분 (해당 항목에 "√" 표시)	[   ] 공직유관단체 지정범위에 해당 / [   ]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			
취업심사대상 기관 여부 (해당 항목에 "√" 표시)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조달 업무	해당 없음
	[   ]	[   ]	[   ]	[   ]

1. 사유

※ 공직유관단체 및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하거나 제외된 경우 그 사유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정관규정 등)

2. 임원 현황

직위	성명	상근여부	주요경력	임기

3. 임원 선임 절차

직위	선임 절차
기관장	
부기관장	
감사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210mm×297mm(백상지 80g/㎡)

4. 재정현황

(단위: 억원)

구분	최초 설립 시	최근 3년간 재정현황			
		직전년도 (    년도)	2년 전 (    년도)	3년 전 (    년도)	3년치 평균
총 자산					
예산총액					
출자금	(    %)	(    %)	(    %)	(    %)	(    %)
출연금	(    %)	(    %)	(    %)	(    %)	(    %)
보조금	(    %)	(    %)	(    %)	(    %)	(    %)
위탁·대행사업비	(    %)	(    %)	(    %)	(    %)	(    %)
기타 (금액 및 출처)					

5. 정부·지방자치단체 위탁 또는 대행 업무 현황

(단위: 억원)

근거	위탁 또는 대행 업무 내용	구분 (위탁,대행)	사업비(단위: 억원)
			(    %)
			(    %)

6. 담당자 정보

구분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전화번호
공직유관단체					
감독기관					

작성방법

1. 기관명: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등기되었거나 또는 법령상 규정된 기관·단체명을 적으십시오.
2. 설립근거: 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 모든 법령 근거를 적으십시오.
3. 기관·단체 유형: ① 한국은행·공기업 ② 임원선임(「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제5호 해당) ③ 지방공사·공단(「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 해당) ④ 재정지원(「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3호 해당) ⑤ 업무위탁·대행(「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4호 해당) ⑥ 재출자·재출연(「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5호 해당) ⑦ 그 외 공공기관(「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6호 해당) 중 선택하여 적되, 두 가지 이상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적으십시오.  
※ 유형만 기재하고,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은 기재하지 마십시오(예시: 임원선임, 재정지원).
4. 감독기관: 공직유관단체를 감독하는 부·처·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
5. 사유: 공직유관단체 및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지정범위에 해당하거나 제외되는 경우, 그 사유 및 근거를 기술하고, 근거가 된 법령 등 자료를 첨부하십시오.
6. 임원현황: 대표이사, 이사, 감사, 집행간부 및 비상근 이사 등 명칭에 관계없이 파악하되, 상근여부를 반드시 구분하여 적으십시오.  
○ 임기: 법령(정관) 상 임기를 적으십시오(예: 3년, 2년 등).  
○ 주요 경력: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퇴직 당시의 소속, 직위를 적으십시오.  
※ 공석의 경우에는 직위(직책)란에는 반드시 표기하고 성명/주요경력란은 공석으로 표기하십시오.
7. 임원선임 절차: 임면권자 및 선임방법 등을 상세하게 적으십시오(예: 이사회 선출 후 장관 승인, 장관이 제청하여 대통령 임명 등)
8. 재정현황: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금 등을 적으십시오.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금·위탁대행사업비 외의 재정사항은 기타로 포함하되, 주요출처(예: 개인(민간)출연, 자체사업수입 등)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 (    %)란에는 해당 연도 예산 대비 출자(출연·보조)금 비율을 적으십시오.
9. 정부·지방자치단체 위탁 또는 대행 업무 현황  
○ 위탁 또는 대행 업무가 법령에 근거를 둔 경우 반드시 그 근거를 적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워 두십시오.  
○ 주요 위탁 또는 대행업무의 내용, 위탁 또는 대행 업무를 통해 발생하는 사업비를 적고, (    %)에는 기관의 예산 대비 사업비 비중을 적으십시오.
10. 담당자 정보  
○ 공직유관단체: 현황표 기재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의 담당자  
○ 감독기관: 기관·단체를 관리하는 감독기관 부서의 담당자

##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앞쪽)

1.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명: ○○공직자윤리위원회
2. 정보제공 목적: 「공직자윤리법」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직자 재산 등록·신고를 위한 금융거래잔액 및 부동산 자료의 제공
3. 동의서 유효기간: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 동의철회서 수리 전까지

4. 등록의무자(정보제공 요청자) 인적 사항

성명	소속	직위	직급 등

5. 동의자(등록의무자 포함) 인적사항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제공 정보 (해당 항목에 "√" 표시)		정보 제공에 동의함 (서명 또는 인)
				금융거래	부동산	
				[ ]	[ ]	
				[ ]	[ ]	
				[ ]	[ ]	
				[ ]	[ ]	
				[ ]	[ ]	
				[ ]	[ ]	

「공직자윤리법」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 등록·신고를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자의 금융거래 내용과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요청하며, 동의자는 그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를 받지 않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 유의사항

1. 동의자의 자필 서명 또는 인이 있어야 합니다('정보 제공 동의'의 진위 여부를 연락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동의자가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십시오.
3. 정보제공 범위
  - 재산 등록·신고 기준일 현재 명의인의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신용정보 중 대출잔액에 관한 자료 포함)
  - 부동산 보유·등기 및 과세정보(지적, 건축, 주택에 관한 자료 포함)
  -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기간: 재산 등록·신고기간 중
4. 정보제공 금융기관명
  -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은행법」에 따른 은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와 농협은행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그 밖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등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회·공단 등

## 재산변동사항 신고 유예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등록 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소속	직위	직급 등
	주소		
최종 재산등록(변동)사항 신고 기준일			
유예 신청 사유	<input type="checkbox"/> 재외공관 근무 <input type="checkbox"/> 해외주재사무소 근무 <input type="checkbox"/> 교육파견 <input type="checkbox"/> 휴직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유예 신청 사유 발생일 및 종료일	발생일                    .   .   . / 종료일                    .   .   .		
유예 신청 재산신고유형	<input type="checkbox"/> 정기변동 신고 / <input type="checkbox"/> 의무면제 신고		
유예 신청 연도	년부터                    년까지 신고분 (            회)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재산변동사항 신고의 유예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등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유예를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사발령사항)
------	----------------------------------

####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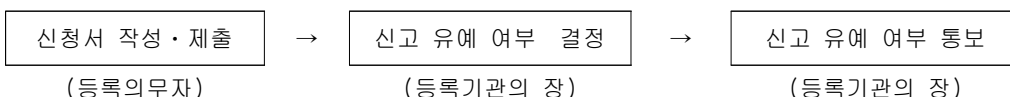
○ 신고유예기간 중이라도 유예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최종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 작성방법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 란 작성방법>

1.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2.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위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 업무 처리절차



## 금융거래잔액 자료 제출요구서

일련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기준일	요청자 소속	요청자 성명	요청자 전화번호

### 작성방법

- 모든 필드의 여백은 뒤에 두어 공란으로 처리하며, 각 필드의 데이터는 띄어 쓰지 않습니다.
- 파일은 일정한 형식을 가진 레코드형태의 순차(SAM)파일로서 필드 구분은 자릿수와 구분자로 구분하며, 레코드구분자는 마침(Enter)으로 구분합니다.

필드명	형식	길이	누적길이	필드별 작성방법
일련번호	숫자	8	8	'00000001'부터 순차적으로 생성
구분자	문자	1	9	구분자 ' ' (Vertical Bar)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숫자	13	22	'-'를 제외한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구분자	문자	1	23	구분자 ' ' (Vertical Bar)
성명	문자	10	33	명의인의 성명
구분자	문자	1	34	구분자 ' ' (Vertical Bar)
기준일	숫자	8	42	YYYYMMDD 형식
구분자	문자	1	43	구분자 ' ' (Vertical Bar)
요청자 소속	문자	30	73	요청자의 소속기관명
구분자	문자	1	74	구분자 ' ' (Vertical Bar)
요청자 성명	문자	10	84	요청자의 성명
구분자	문자	1	85	구분자 ' ' (Vertical Bar)
요청자 전화번호	문자	15	100	요청자의 전화번호
구분자	문자	1	101	구분자 ' ' (Vertical Bar)

210mm×297mm(백상지 80g/㎡)

## 금융거래잔액 자료 통보서

금융기관 구분코드	금융 기관명	일련 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기준일	상품유형 코드	랩구분	계좌 번호	종목 코드	상품명	수량	계좌 개설일	금액

### 작성방법

- 전산 입력 자료의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파일은 일정한 형식을 가진 레코드형태의 순차(SAM)파일로서 필드 구분은 자릿수와 구분자로 구분하며, 레코드구분자는 마침표(Enter)으로 구분합니다.
- 모든 금액, 수량 필드의 여백은 앞에 두고, 나머지 필드의 여백은 뒤에 두며, 여백은 공란(space)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서식에서 정해진 길이보다 긴 문자(텍스트)는 해당 필드에서 정의한 길이만큼만 추출하여(잘라내어) 작성합니다.

필드명	형식	길이	누적길이	필드별 작성방법																																																
금융기관구분코드	숫자	2	2	은행(01),보험(02),증권회사(03),새마을금고(04),신용협동조합(05),상호저축(06),공제회(07),공단(08),부동산신탁(09),투자신탁(10),종합금융(11),카드사(12),여신금융업(13),펀드사(14),기타(99)로 구분																																																
구분자	문자	1	3	구분자 ' ' (Vertical Bar)																																																
금융기관명	문자	30	33	금융기관명																																																
구분자	문자	1	34	구분자 ' ' (Vertical Bar)																																																
일련번호	숫자	8	42	자료 제출요구서의 일련번호와 동일하게 작성																																																
구분자	문자	1	43	구분자 ' ' (Vertical Bar)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숫자	13	56	'-'를 제외한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구분자	문자	1	57	구분자 ' ' (Vertical Bar)																																																
성명	문자	10	67	명의인의 성명																																																
구분자	문자	1	68	구분자 ' ' (Vertical Bar)																																																
기준일	숫자	8	76	YYYYMMDD 형식																																																
구분자	문자	1	77	구분자 ' ' (Vertical Bar)																																																
상품유형코드	숫자	3	80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코드</th> <th>유형</th> <th>코드</th> <th>유형</th> <th>코드</th> <th>유형</th> </tr> </thead> <tbody> <tr><td>100</td><td>예금</td><td>107</td><td>기타 수익증권</td><td>302</td><td>특수채</td></tr> <tr><td>101</td><td>보험불입액</td><td>200</td><td>국내상장주식</td><td>303</td><td>금융채</td></tr> <tr><td>102</td><td>출자금</td><td>201</td><td>국내비상장주식</td><td>304</td><td>회사채</td></tr> <tr><td>103</td><td>공모펀드</td><td>202</td><td>외국상장주식</td><td>305</td><td>기타 채권</td></tr> <tr><td>104</td><td>사모펀드</td><td>203</td><td>외국비상장주식</td><td>400</td><td>주식매수선택권</td></tr> <tr><td>105</td><td>선물옵션</td><td>300</td><td>국채</td><td>500</td><td>대출</td></tr> <tr><td>106</td><td>예수금</td><td>301</td><td>지방채</td><td>999</td><td>기타</td></tr> </tbody> </table>	코드	유형	코드	유형	코드	유형	100	예금	107	기타 수익증권	302	특수채	101	보험불입액	200	국내상장주식	303	금융채	102	출자금	201	국내비상장주식	304	회사채	103	공모펀드	202	외국상장주식	305	기타 채권	104	사모펀드	203	외국비상장주식	400	주식매수선택권	105	선물옵션	300	국채	500	대출	106	예수금	301	지방채	999	기타
				코드	유형	코드	유형	코드	유형																																											
				100	예금	107	기타 수익증권	302	특수채																																											
				101	보험불입액	200	국내상장주식	303	금융채																																											
				102	출자금	201	국내비상장주식	304	회사채																																											
				103	공모펀드	202	외국상장주식	305	기타 채권																																											
				104	사모펀드	203	외국비상장주식	400	주식매수선택권																																											
				105	선물옵션	300	국채	500	대출																																											
				106	예수금	301	지방채	999	기타																																											
구분자	문자	1	81	구분자 ' ' (Vertical Bar)																																																
랩(wrap)구분	숫자	2	83	일임형(01), 자문형(02), 랩상품이 아니면 공백 처리																																																
구분자	문자	1	84	구분자 ' ' (Vertical Bar)																																																
계좌번호	문자	28	112	상품의 계좌번호																																																
구분자	문자	1	113	구분자 ' ' (Vertical Bar)																																																
종목코드	문자	6	119	주권 또는 채권 종목코드(주권 또는 채권이 아니면 공백 처리)																																																
구분자	문자	1	120	구분자 ' ' (Vertical Bar)																																																
상품명	문자	40	160	상품명(주식명, 채권명, 계정과목, 예금의 종류 등)																																																
구분자	문자	1	161	구분자 ' ' (Vertical Bar)																																																
수량	숫자	15	176	주권의 수량(주권이 아니면 공백 처리)																																																
구분자	문자	1	177	구분자 ' ' (Vertical Bar)																																																
계좌개설일	문자	8	185	YYYYMMDD 형식																																																
구분자	문자	1	186	구분자 ' ' (Vertical Bar)																																																
금액	문자	15	201	계좌의 잔액(또는 평가금액)																																																
구분자	문자	1	202	구분자 ' ' (Vertical Bar)																																																

※ 기준일의 금액을 작성하며, 천원 단위(천원 미만은 버림)로 작성합니다.

## 등록사항 심사결과 보고서

심사기관명	작성기준일
-------	-------

(단위: 명)

구분	계	① 정기변동 신고자	② 신규 등록자	③ 재등록자	④ 의무 면제자	⑤ 퇴직자
<b>⑥ 심사대상</b>						
심사 결과	⑦ 이상없음					
	⑧ 실무종결					
	⑨ 보완명령					
	⑩ 경고 및 시정조치					
	⑪ 해임·징계의결요구					
	⑫ 과태료 부과					
	⑬ 해임·징계의결요구(법 제22조)					
심사 내용	⑭ 소명서 요청					
	⑮ 출장조사					
	⑯ 개별자료요청					
	⑰ 출석요구					
	⑱ 조사의뢰					
	⑲ 금융조회					

### 작성방법

- ⑦ 이상없음: 재산심사결과 이상이 없는 사람의 수
  - ⑧ 실무종결: 재산심사결과 실무종결 처리한 사람의 수
  - ⑨ 보완명령: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누락하거나 가액 합산 등에 오기가 있다고 인정하여 보완을 명한 사람의 수
  - ⑩ 경고 및 시정조치: 법 제8조의2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경고 및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람의 수
  - ⑪ 해임·징계의결요구: 법 제8조의2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 조치를 요구한 사람의 수
  - ⑫ 과태료 부과: 법 제8조의2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조치를 요구한 사람의 수
  - ⑬ 해임·징계의결요구(법 제22조): 법 제8조의2 및 제22조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조치를 요구한 사람의 수
  - ⑭ 소명서 요청: 구두(전화) 또는 심사기관장 명의의 서면으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람의 수를 적으며, 단순한 확인 또는 증빙서 제출은 제외
  - ⑮ 출장조사: 물건소재지나 그 밖의 등록재산 관계 및 소명서 진술내용의 진위 등 사실 확인을 위한 현지출장 조사대상이 된 사람의 수
  - ⑯ 개별자료요청: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각급 기관(금융기관 제외)에 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람의 수(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에 일괄하여 부동산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제외)
  - ⑰ 출석요구: 등록의무자나 그 밖의 재산등록관계인의 출석진술을 요구한 사람의 수를 적으며 단순히 자료 제출을 위한 출석은 제외
  - ⑱ 조사의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조사 의뢰 승인요청을 한 사람의 수
  - ⑲ 금융조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금융조회 승인요청을 한 사람의 수
- ※ ⑨~⑬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양식에 따라 그 명단을 제출해야 함.

1. 보완명령 대상자

일련번호	소 속	직 위(직급 등)	성 명	보완요구내용	비 고
		( )			

\* "보완요구내용"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완명령'을 한 부실등록 내용 및 보완요구내용 기재

2. 법적조치요구 대상자(⑩~⑬에 해당하는 사람)

일련번호	조치요구내용	소 속	직 위(직급 등)	성 명	위반내용	비 고
			( )			

\* 조치 요구 내용: 법 제8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 중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요구한 내용 기재

※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 [예: 서기관, 8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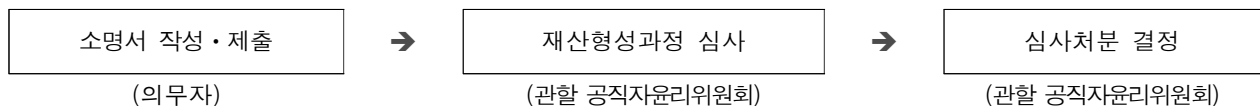
## 소명 내용

### 작성방법

※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소명하고 관련 증빙자료(최근 5년간)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토지·건물): 취득 또는 매도 일자, 취득 또는 매도 금액, 취득 또는 매도 경위, 취득당시 주소 또는 거소, 자금원 또는 자금의 사용처 등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취득(매도)시기, 취득(매도)금액, 자금원(자금사용처) 등
- 현금(수표 포함): 취득시기, 자금원(자금사용처), 보유사유 등
- 예금: 주요 자금원 또는 주요 자금 사용처 등
- 증권: 취득경위, 주요 자금원 또는 주요 자금 사용처 등
- 채권: 주요 자금원 또는 주요 자금 사용처, 채무자와의 관계 등
- 채무: 주요 자금 사용처 또는 주요 자금원, 채권자와의 관계 등
- 금·백금, 보석류, 골동품·예술품, 회원권: 취득 또는 매도 시기, 취득 또는 매도 금액, 경위, 주요 자금원 또는 주요 자금 사용처 등
- 출자지분, 출연재산: 시기, 경위, 자금원 등

### 업무 처리절차



## 증빙자료대체소명서

등록 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소속	직위	직급 등	
	주소			

대체 소명 내용	
재산의 종류	
재산 내용 (소재지, 가액 등 권리명세)	
대체 사유	
소명 내용	

※ 반드시 거래상대방(성명, 연락처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체소명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등록의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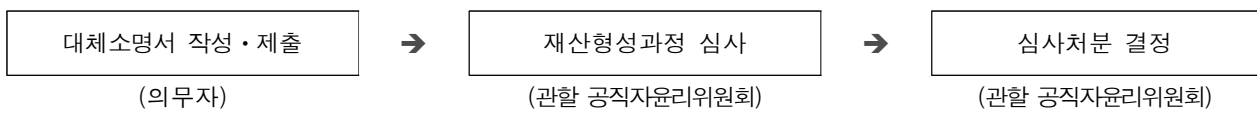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을 하지 않거나 **최근 5년간** 증빙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요구에 대해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제30조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업무 처리절차



##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

(앞쪽)

소속	직위	성명		
(단위: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액 (실거래가격)	비고
▶ 토지(소계)			(            )	
▶ 건물(소계)			(            )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            )	
▶ 현금(소계)				
▶ 예금(소계)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소계)				
▶ 증권(소계)				
▶ 채권(소계)				
▶ 채무(소계)				
▶ 금 및 백금(소계)			(            )	
▶ 보석류(소계)			(            )	
▶ 골동품 및 예술품(소계)			(            )	
▶ 회원권(소계)			(            )	
▶ 지식재산권				
▶ 합명·합자·유한회사 <b>출자지분</b> (소계)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고지거부 사항				
총계				

위의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등록의무자

(서명 또는 인)

등록기관의 장 귀하

## 작성방법

### 1. 소속·직위 및 본인과의 관계

- **장성급** 장교의 소속은 국방부로 적고, 직위는 적지 마십시오.
- 등록의무자의 친족의 성명은 적지 않고, 본인과의 관계만 적으십시오.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속·직계비속도 '고지거부 사항'란에 본인과의 관계를 적은 후 고지거부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 2. 재산의 종류

- 재산의 종류별로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 토 지
  - 임야·전·답·대지·잡종지 등을 적으십시오.
- 건 물
  - 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상가·빌딩·오피스텔·사무실 등을 적으십시오.
  - 아파트, 오피스텔의 경우는 건물면적만 적고 대지면적은 적지 마십시오.
    - ※ 미입주 분양아파트도 적으십시오.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 광업권·어업권·자동차·항공기·선박·건설기계 등을 적으십시오.
- 동 산
  - 현금·수표·예금(파생상품증거금 포함)·「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또는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채권·채무·금·백금·보석류
  - 증권: 주식·국채·공채·회사채·백지신탁·주식매수선택권 등을 적으십시오.
  - 골동품·예술품: 도자기·서양화·동양화·서예·공예·수예·조각·철기 등을 적으십시오.
  - 회원권: 골프회원권, 헬스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을 적으십시오.
  - 지식재산권: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 등을 적으십시오.
  -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출자지분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3.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

- ※ "최초재산등록 신고서"의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 건물: 주택에 대하여는 단독주택의 경우 지번, 공동주택의 경우 동·호수 생략  
예) A시 B동 C아파트 1동 100호 → A시 B동 C아파트/A시 B동 123번지 → A시 B동
- 예금: 개인별·예탁기관별로 예금의 합계액을 적으십시오.
- 증권: 개인별·종목별로 수량을 적고 합계액을 '가액'란에 적으십시오.
-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출자지분
  - 회사명·출자금액·지분비율 및 재산등록 기준일 이전 최근 사업연도의 회사 결산서상의 연간매출액을 적으십시오.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법인명·출연재산·보유직위를 적으십시오.

### 4. 가액

- ( ) 안에는 실거래가액(실매입액)을 적으십시오.
- 증권 중 **주식매수선택권**, 지식재산권,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총계에 반영하지 마십시오.

### 5. 그 밖의 사항

- **재산의 취득일자·소득원 등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비고'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적지 마십시오(친족 성명, 연락처, 계좌번호 등).
-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은 관보에 게재됩니다.
- 최초재산등록 신고서와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은 각각 별도로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의 재산내용은 최초재산등록 신고서의 재산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

(앞쪽)

소속	직위	성명					
(단위: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 )	( )		
▶ 건물(소계)				( )	( )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 )	( )		
▶ 현금(소계)							
▶ 예금(소계)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소계)							
▶ 증권(소계)							
▶ 채권(소계)							
▶ 채무(소계)							
▶ 금 및 백금(소계)				( )	( )		
▶ 보석류(소계)				( )	( )		
▶ 골동품 및 예술품(소계)				( )	( )		
▶ 회원권(소계)				( )	( )		
▶ 지식재산권							
▶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소계)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 사항							
총계							증감액: (가액변동: )

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등록의무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등록기관의 장 귀하

## 작성방법

### 1. 소속·직위 및 본인과의 관계

- **장성급** 장교의 소속은 국방부로 적고, 직위는 생략합니다.
- 등록의무자의 친족의 성명은 적지 않고, 본인과의 관계만 적으십시오.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속·직계비속도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 사항'란에 본인과의 관계를 적은 후 고지거부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 이미 신고한 친족 중 사망하거나 결혼한 딸의 경우는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 사항'란에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한 후 등록제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 2. 재산의 종류

- 재산의 종류별로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 토지
  - 임야·전·답·대지·잡종지 등을 적으십시오.
- 건물
  - 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상가·빌딩·오피스텔·사무실 등을 적으십시오.
  - 아파트, 오피스텔의 경우는 건물면적만 적고 대지면적은 적지 마십시오.
  - ※ 미입주 분양아파트도 적으십시오.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 광업권·어업권·자동차·항공기·선박·건설기계 등을 적으십시오.
- 동산
  - 현금·수표·예금(파생상품증거금 포함)·「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또는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채권·채무·금·백금·보석류
  - 증권: 주식·국채·공채·회사채·백지신탁·주식매수선택권 등을 적으십시오.
  - 골동품·예술품: 도자기·서양화·동양화·서예·공예·수예·조각·철기 등을 적으십시오.
  - 회원권: 골프회원권, 헬스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을 적으십시오.
  - 지식재산권: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 등을 적으십시오.
  -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출자지분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3. 소재지·면적 등 권리의 명세

- ※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의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출자 지분
  - 회사명, 출자금액 및 지분비율의 변동사항,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이전 최근 사업연도의 회사 결산서상의 연간매출액의 증감 사항을 적으십시오.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법인명·출연재산·보유직위 등의 변동사항을 적으십시오.

### 4. 종전가액: 종전신고시점의 재산가액을 적으십시오.

### 5. 변동액: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의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 ) 안에는 실거래가격을 적으십시오.

### 6. 현재가액: 종전가액에서 변동액을 반영한 금액을 적으십시오.

### 7. 총계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전년대비 증감액을 적고 괄호 안에는 가액변동으로 인한 증감액을 적으십시오.
- 증권 중 주식매수선택권, 지식재산권,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변동분은 총계에 반영하지 마십시오.

### 8. 변동사유

- 매도·매입·상속·증여·유증·수용·가액변동 등 재산증감 변동원인을 적고, 재산의 증감일자·증감경위·소득원 등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변동사유'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에서 동산으로, 또는 그 반대로 재산증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항별로 그 관계도 적으십시오.
- 예금 및 증권의 '변동사유'란에는 총변동액의 변동원인을 기재(개인별 변동사유기재는 생략)하되, 개인별, 계좌번호별로 특이사항이 있으면 적으십시오.

### 9. 그 밖의 사항

-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적지 마십시오(친족성명, 연락처, 계좌번호 등).
-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은 관보에 게재됩니다.
-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와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은 각각 별도로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의 재산내용은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의 재산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주식 [ ] 매각·백지신탁계약 체결 [ ] 지연사유서**  
**[ ]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신청인	성명	(한글)	소속	직위 (직급 등) ( )
		(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주소			

기준일 (해당 항목에 √ 표시하고 기준일 기재)	<input type="checkbox"/>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input type="checkbox"/>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재산의 변동사항 신고 유예의 사유가 소멸된 날 <input type="checkbox"/> 기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상승하여 3천만 원을 초과한 날 <input type="checkbox"/> 새로운 주식을 3천만 원을 초과하여 취득한 날 <input type="checkbox"/> 직무(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변경된 날 <input type="checkbox"/> 법 제14조의13제1항에 따라 직위변경이 완료된 날 <input type="checkbox"/> 법 제14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주식회사의 발기인으로서 주식을 인수한 날 <input type="checkbox"/> 법 제14조의6제2항 본문에 따른 상속이나 법 시행령 제27조의9 각호에 따른 사유로 새로 주식을 취득한 날 <input type="checkbox"/> 법 제14조의5제7항 또는 제14조의12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은 날
	<p>[기준일]    년    월    일</p> <p>※ 선택한 항목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지연 사유	<p>※ 주식의 매각·백지신탁계약 체결을 또는 심사청구를 지연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p>
-------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매각 및 백지신탁계약 의무 이행 지연사유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직무관련성 심사의 청구기간을 지나서 청구하게 된 지연사유에 대하여 소명합니다.

년    월    일

소명인

(서명 또는 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귀하

**작성방법**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 란 작성방법>

1.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2.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 [예: 서기관, 8등급]





## 2. 직무관련성 여부

순번	소유자	내용
1	관련사항	보유주식 발행 기관과 관련되는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 관련 여부
	관련여부	
2	관련사항	보유주식 발행 기업에 대한 각종 수사·조사·감사·검사 관련 여부
	관련여부	
3	관련사항	보유주식 발행 기업에 대한 인가·허가·면허·특허 관련 여부
	관련여부	
4	관련사항	보유주식 발행 기업에 대한 조세의 조사·부과·징수 관련 여부
	관련여부	
5	관련사항	보유주식 발행 기업에 대한 법령상 지도·감독 관련 여부
	관련여부	
6	관련사항	보유주식 발행 기업에 대한 예산의 편성·심의·집행 또는 공사 및 물품의 계약 관련 여부
	관련여부	
7	관련사항	보유주식 발생 기업에 대한 법률상 사건의 심리 또는 심판 관련 여부
	관련여부	
8	기타	

## 작성방법

위의 관련사항이 공무원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여부'란에 "해당 없음"으로 적고,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 3. 제출자료

구분	제출자료 내용
1. 담당직무 내용 관련 자료	(1)
	(2)
	(3)
	(4)
	(5)
2. 보유주식 관련 자료	(1)
	(2)
	(3)
	(4)
	(5)
3. 심사청구사유 관련 자료	(1)
	(2)
	(3)
	(4)
	(5)

## 작성방법

1. 담당직무내용 **관련 자료**: '제출자료 내용'란에 해당 기관의 직제 규정, 사무분장, 위임전결 규정 등 신청인의 담당직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목 또는 자료명을 적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십시오.
2. 보유주식 **관련 자료**: 주식발행기업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상장주식은 잔고증명서, 그 외 비상장주식은 기업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재무제표 등)의 제목을 적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십시오.
3. 심사청구사유 **관련 자료**: 보유주식 발행기업과 신청인의 직무관련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그 제목 또는 자료명을 적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십시오(관련 자료에는 보유주식 발행기업과 관련된 각종 수사·조사·감사·검사, 인가·허가·면허·특허, 조세의 조사·부과·징수, 공사 및 물품의 계약 등과 관련이 없을 경우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도 포함됨).

# 신탁재산(주식) [ [ ] 처분완료 사실 [ ] 하한가액 이하 하락 ] 통보서

순번	위탁자				수탁가액 (천원)	변동가액 (천원)	처분완료 여부
	성명	소속	직위	직급 등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8제2항에 따라 당사와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공직자의 신탁재산(주식)이  
[ [ ] 처분 완료  
[ ] 하한가액 이하로 하락 ] 된 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의 장 직인

○○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작성방법**

1. ‘소속’, ‘직위’ 및 ‘직급 등’ 란은 최초 신탁계약 체결 시 기관명, 직위 및 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전보 등 신분상의 변동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변동된 소속기관명, 직위 및 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2.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 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 [예: 서기관, 8등급]
3. 수탁가액은 최초 신탁계약 체결 시의 금액을 적으십시오.
4. 변동가액은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평가된 신탁재산액을 적고, 신탁재산운용보고서 등 세부내용은 별도 첨부하십시오.
5. 처분완료 여부는 최초로 신탁계약 체결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적으십시오.





## 연차보고 자료 (            년도)

(1쪽)

등록기관명	작성기준일                    년 12월 31일
-------	------------------------------------

1. 등록의무자 현황(단위 : 명)

구분	① 전년도 등록의무자	② 신규등록자	③ 재등록자	④ 의무면제자	⑤ 퇴직자 (신고면제자 포함)	⑥ 전입자	⑦ 전출자	⑧ 해당 연도 등록의무자
⑨ 계								
정무직								
고위공 무원단	소계							
	공개							
	비공개							
1급								
2급								
3급								
4급								
.....								
⑩ 특정직	소계							
공직유관단체								
기타								
비고								

**작성방법**

재산공개대상자는 (    ) 안에 함께 적음

- ① “전년도 등록의무자”란 연차보고자료 작성 기준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등록의무자임.  
- 등록의무자 통계의 변동요인인 ② ~ ⑦ 항목은 연차보고자료 작성 기준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의 의무발생일(신분 변동일)을 기준일자로 함.
  - ② “신규등록자”는 신규임용, 승진으로 등록의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함.
  - ③ “재등록자”는 등록의무자가 전보·강임·강등·퇴직 등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면하였다가 3년(퇴직은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를 말함.
  - ④ “의무면제자”는 보고서 작성 기준연도에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전보·강임 등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면한 사람을 말함.
  - ⑤ “퇴직자”란은 퇴직하여 변동신고의무가 생긴 사람과 신고면제자를 말하며 공직유관단체로 사실상 전입·전출을 한 경우는 제외함.  
(신고면제자는 ‘비고’란에 “신고면제 : ○명”으로 표기)  
- 등록의무자가 공무원을 퇴직하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등록대상인 경우)으로 갔을 때는 전출기관에서는 ⑦전출자의 해당 직급 등의 란을, 전입기관에서는 ⑥전입자의 ‘공직유관단체’란에 동시 적으며, 그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함께 적음
  - ⑧ “해당 연도 등록의무자”란 연차보고자료 작성기준연도의 12월 31일 현재의 등록의무자의 수를 말하며, 그 다음 해 1월 중 정기 변동신고 대상자 수를 ‘비고’란에 기재 함.
  - ⑨ ‘계’란은 (①+②+③+⑥) - (④+⑤+⑦)= ⑩ 당해연도 등록의무자라는 등식이 성립됨을 원칙으로 하되, 불일치의 경우는 사유를 ‘비고’란에 적음
  - ⑩ ‘특정직’란은 일반직 직급에 준하여 직급 구분이 가능한 직종(예: 연구관, 지도관, 장학관등)은 직급을 구분하여 적고, 일반직 직급과 다른 검사·군인·경찰·소방공무원은 직종별 직급체계에 맞추어 구분하여 적음
- ※ ② ~ ⑦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의 양식에 따라 그 명단을 제출해야 함.
- ※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가. 신규등록자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신규등록사유	의무발생일

나. 재등록자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직전 신분			의무발생일
				소속	직위	직급 등	

다. 의무면제자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의무면제사유	신분발생일

라. 퇴직자(신고면제자 포함)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의무발생일	비고

작성방법

○ 신고면제자는 '비고'란에 사망 등 사유 기재

마. 전입자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전입 전 신분		전입일자
				소속	직위	

바. 전출자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전출 후 신분		전출일자
				소속	직위	

2. 등록사항 심사현황(단위: 명)

구분		계	① 정기변동 신고자	② 신규 등록자	③ 재등록자	④ 의무면제자	⑤ 퇴직자
⑥ 심사대상							
심사 결과	⑦ 이상없음						
	⑧ 보완명령						
	⑨ 법적조치요구						
심사 내용	⑩ 소명서 요청						
	⑪ 출장조사						
	⑫ 개별자료요청						
	⑬ 출석요구						
	⑭ 조사의뢰						
	⑮ 금융조회						

**작성방법**

작성대상은 비공개자 중 그 기관에 심사가 위임된 사람이며, 1명에 대하여 신규등록·퇴직 및 의무면제 등이 중복될 경우 각각 심사대상으로 적음

- ⑦ 이상없음: 재산심사 결과 이상이 없거나, 실무종결 처리한 사람
- ⑧ 보완명령: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누락하거나 가액 합산 등에 오기가 있다고 인정하여 보완을 명한 사람
- ⑨ 법적조치요구: 법 제8조의2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한 사람
- ⑩ 소명서요청: 물건소재지나 그 밖의 등록재산 관계 및 소명서 진술내용의 진위 등 사실 확인을 위한 현지출장 조사대상이 된 사람
- ⑫ 개별자료요청: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각급 기관(금융기관 제외)에 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람(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에 일괄하여 부동산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제외)
- ⑬ 출석요구: 등록의무자나 그 밖의 재산등록관계인의 출석진술을 요구한 사람을 말하며, 단순히 자료 제출을 위한 출석은 제외
- ⑭ 조사의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조사 의뢰 승인요청을 한 사람
- ⑮ 금융조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금융조회 승인요청을 한 사람

※ ⑨과 ⑩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양식에 따라 그 명단을 제출해야 함.

가. 보완 명령자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보완요구 내용	비고

나. 법적 조치 요구자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위반내용	조치요구 내용	윤리위 결정

**작성방법**

- '보완요구 내용'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완명령을 한 부실등록내용 및 보완요구 내용을 적음
- '조치요구 내용'란은 법 제8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 중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요구한 내용을 적고 '윤리위 결정'란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적음

3. 기간 연장자(단위: 명)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연장기간(일수)	연장사유

작성방법

○ 작성기준일 현재 「공직자윤리법」 제7조에 따라 등록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함.

4. 고지거부 현황(단위: 명)

계	직계존속·직계비속 모두 고지거부	직계존속만 고지거부	직계비속만 고지거부

작성방법

- 비공개자 중 그 기관에 심사가 위임된 사람 중 최초등록, 변동신고를 구분하지 않고 작성기준일 현재 고지거부 중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퇴직자 등 작성일 현재 등록의무자가 아닌 경우 제외)
- 고지 거부한 직계존속·직계비속 인원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지 거부한 등록의무자 수를 적음

5. 등록서류 열람·복사 현황(단위: 명)

구분	계		열람		복사	
	신청	허가	신청	허가	신청	허가
본인 신청						
소속 기관장이 비위사건 관련 여부 판단 필요						

6. 재산변동사항 신고 유예자 현황

가. 직급별

구분	전년도 말 유예자 수	해당 연도 말 유예자 수	해당 연도 변동	
			증가	감소
계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소계			
	공개			
	비공개			
1급				
2급				
3급				
4급				
.....				
특정직	소계			
공직유관단체				
기타				

작성방법

○ 재산공개대상자의 수는 ( ) 안에, 계약직공무원의 수는 < > 안에 각각 함께 적음

나. 기간별·사유별

유예 연수 별				유예 사유별						비고
계	1년	2년	3년	계	재외공관 근무	해외주재 사무소 근무	교육파견	휴직	기타	

작성방법

○ 작성기준일 현재 유예자를 대상으로 함.

7. 그 밖의 의견 또는 건의사항

\_\_\_\_\_



## 영리사기업체외의 취업심사대상기관 명세서

< 작성기관 : >

연번	기관명	유형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고유번호)	소재지	외형거래액 또는 기본재산 (억원)	비고

**작성방법**

- 작성기관별로 해당 기관을 "가, 나, 다"순으로 적되, 유형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십시오.
- 유형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제6호 및 제8호에서 제11호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유형을 명시하십시오.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은 **별지 제18호의4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의5서식에 작성하십시오.**
- 외형거래액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범무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하십시오.
- 기본재산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하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

## 사기업체 등이 가입하고 있는 법인·단체 명세서

① 연번	② 유형	③ 법인·단체명	④ 설립근거	⑤ 대표자	⑥ 사업자등록 번호 (고유번호)	⑦ 소재지	⑧ 회원사 수	⑨ 취업심사대상 회원사 수	⑩ 전년도 취업심사대상 기관 여부	⑪ 첨부자료	⑫ 비고

### 작성방법

- 본 서식은 관할 법인·단체(이하 "협회"라고 함) 중 다음에 해당되는 협회를 대상으로 작성하십시오.
  1. **취업심사대상이 되는 사기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협회
  2. 위 1번의 협회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협회(협회의 협회)
- 항목별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작성기관별로 해당 기관을 가나다순으로 작성하십시오.
  - ② **취업심사대상 사기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협회"를, 취업심사대상 협회 등이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연합회 등"으로 작성하십시오.
  - ④ 해당 협회가 설립·운영되는 근거가 되는 법령, 행정규칙, 조례 등의 법령명을 적으십시오.
  - ⑧ 해당 협회에 가입하고 있는 전체 회원사(협회 포함) 수를 적으십시오.
  - ⑨ 인사혁신처에서 해당 년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한 사기업체**가 회원사로 가입한 수를 적으십시오(협회의 협회의 경우 정확한 회원사 수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략 몇 개인지 기입).
  - ⑩ 해당 협회가 전년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하면 "○"를, 해당하지 않으면 "×"를 적으십시오.
  - ⑪ 해당 협회의 '정관', '회원사 현황'을 명세서와 별도로 첨부하고, 본 란에는 첨부자료명을 적으십시오

## 방위산업분야 취업심사대상기관 명세서

< 작성기관 : \_\_\_\_\_ >

연번	유형	기관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고유번호)	소재지	방산업체 지정일	최근3년 간 중개수수료 신고 건수	비고

**작성방법**

1. 작성기관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형’란에 “방산업체”라고 기재하고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른 방산업체 현황을 기관명의 “가, 나, 다”순으로 작성하십시오(‘최근3년 간 중개수수료 신고건수’란은 기재하지 않음).
2. 작성기관 방위사업청은 ‘유형’란에 “군수품무역대리업체”라고 기재하고 「방위사업법」 제57조의4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신고한 실적이 있는 업체의 현황을 기관명의 “가, 나, 다”순으로 작성하십시오(‘방산업체 지정일’란은 기재하지 않음).

## 국민안전분야 취업심사대상기관 명세서

< 작성기관 : \_\_\_\_\_ >

연번	기관명	관련근거	인증 등 유형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고유번호)	소재지	수행업무	비고

### 작성방법

1. 관련근거: 인증·검사·시험·평가·지정 등 업무 수행의 근거가 되는 법령문과 조문을 기재하십시오.
2. 인증 등 유형: “인증”, “검사”, “시험”, “평가”, “지정” 등 업무 수행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유형을 기재하십시오.  
 ※ “인증”, “검사”, “시험”, “평가”, “지정”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은 “기타”로 기재하십시오. ※ 예) 기타: 검정
3. 수행업무: 인증 등의 업무 수행기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상세히 작성하십시오.  
 ※ 예) 유기농축산물을 생산·취급하는 자에 대한 인증 등

210mm×297mm(백상지 80g/㎡)

##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앞쪽)

요청인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연락 처	자택
	직위			휴대전화
	직급 등			전자우편주소
	퇴직일자			주소
취업예정사 실	취업예정기관 명칭			취업예정일
	기관의 규모(억원)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연간 외형거래액
취업경위	취업예정직위			
	취업 후 담당업무			
	취업 후 활동계획 * 본인의 특정한 업무경력과 취업예정업체의 담당 예정업무와의 관련성 등 구체적으로 작성			
	취업동기 및 경로 * 공모나 추천 등 구체적 경로를 자세히 작성			
	취업예정기관에서 본인을 채용하려는 이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제한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첨부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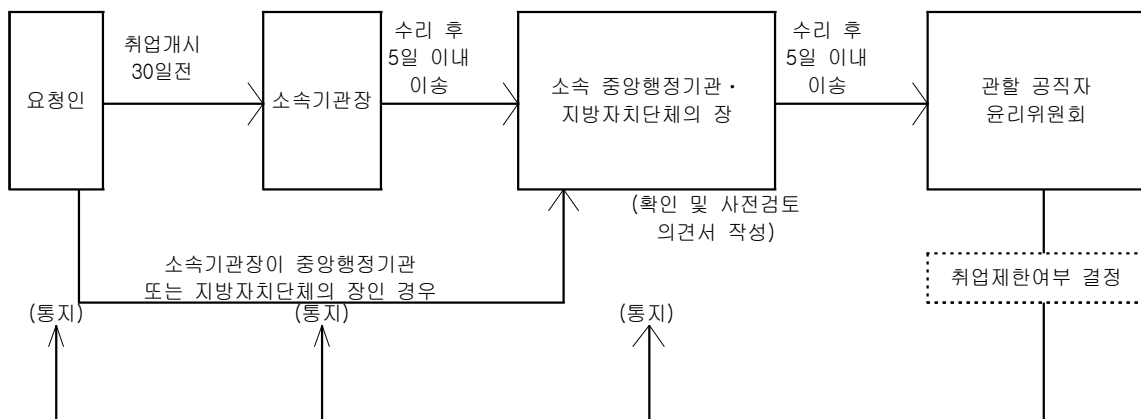
별지 제18호의7서식(취업 예정 확인서)

### 작성방법

1. 소속·직위·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직위·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2.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 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3. 기관의 규모 작성방법
  - 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은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1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적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

업무 처리절차



## 취업 예정 확인서

취업 예정자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등	
취업예정 사실	취업예정기관 명칭	기관의 규모 (억원)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연간 외형거래액
	취업예정 직위 및 예상연봉액	취업예정일	
채용 경위 및 채용 후 역할	채용방법		
	※ 공모·추천 등 구체적 경로를 적고, 공모인 경우 홈페이지 등 채용공고문 별첨		
	채용이유		
	채용 후 담당업무		
	역할 및 활용계획		
작성자		연락처(사무실/휴대폰/FAX/E-mail)	

위 신청인이 해당 기관에 취업할 예정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인)

○○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 작성방법

1. 소속·직위·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직위·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2.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3. 기관의 규모 작성방법
  - 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은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적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

##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

(앞 쪽)

### I.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자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및 직급 등

### II. 취업예정기관 및 직위 등

취업예정기관 명칭	취업예정직위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및 외형거래액	취업예정일
주요 사업 내용 ※ 구체적으로 파악 작성	담당예정업무 ※ 구체적으로 파악 작성

### III. 검토 사항

1. 취업심사대상자인지 여부

2. 취업심사대상기관 해당 여부

3.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 등 (업무분장규정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파악)

근무기간	직위	직급 등	부서명 (기관명)	부서(기관)의 주요업무	비고

4.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해당 업무 수행 여부, 취업예정기관에 대해 각 호(가~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등 구체적으로 작성)

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나.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다.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210mm×297mm(백상지 80g/㎡)

라.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마.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바.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사. 취업예정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아. 그 밖의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취업예정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5. 해당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하였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위 제4호 각 목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등·회계법인·세무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또는 합작법무법인**이 사건을 수임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여부(**해당 업무 수행 여부**)
6. 해당자가 취업예정기관에 취업되었을 경우 퇴직 전 소속기관·단체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여부(**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이유와 적다고 보는 이유를 각각 작성**)
7.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퇴직 사유, 공무원 연금 수급여부, **상벌 관계**,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 승인 심사 필요성 여부 등)

#### IV. 종합 검토 의견

#### 작성방법

1. 소속·직위·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직위·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2.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3.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및 외형거래액 작성방법
  - 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은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적으십시오.

## 우선 취업 신청서

취업예정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연락 처	자택
	직위		휴대전화
	직급 등		전자우편주소
	퇴직일자	주소	
취업예정 기관현황	취업예정기관 명칭	기관의 규모 (억원)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연간 외형거래액
	취업예정직위	취업예정일	
우선취업 허가 신청사유	※ 증명서류 첨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선 취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 작성방법

1. '소속란', '직위' '직급 등'란에는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직위·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2.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 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3. 기관의 규모 작성방법
  - 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은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적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

## 취업승인 신청서

(앞 쪽)

신청인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연락처	자택	
	직위			휴대전화	
	직급 등			전자우편주소	
	퇴직일자			주소	
취업예정사실	취업예정기관 명칭		취업예정일		
	기관의 규모 (억원)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연간 외형거래액		
취업경위	취업예정직위				
	취업 후 담당업무				
	취업 후 활동계획				
	* 본인의 특정한 업무경력과 취업예정기관의 담당예정업무와의 관련성 등 구체적으로 작성				
	취업동기 및 경로				
* 공모나 추천 등 구체적 경로를 자세히 작성					
취업예정기관에서 본인을 채용하려는 이유					
취업승인 신청사유 (간략히 기재) 및 근거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각 호 중 해당 호를 기재	근거				
	사유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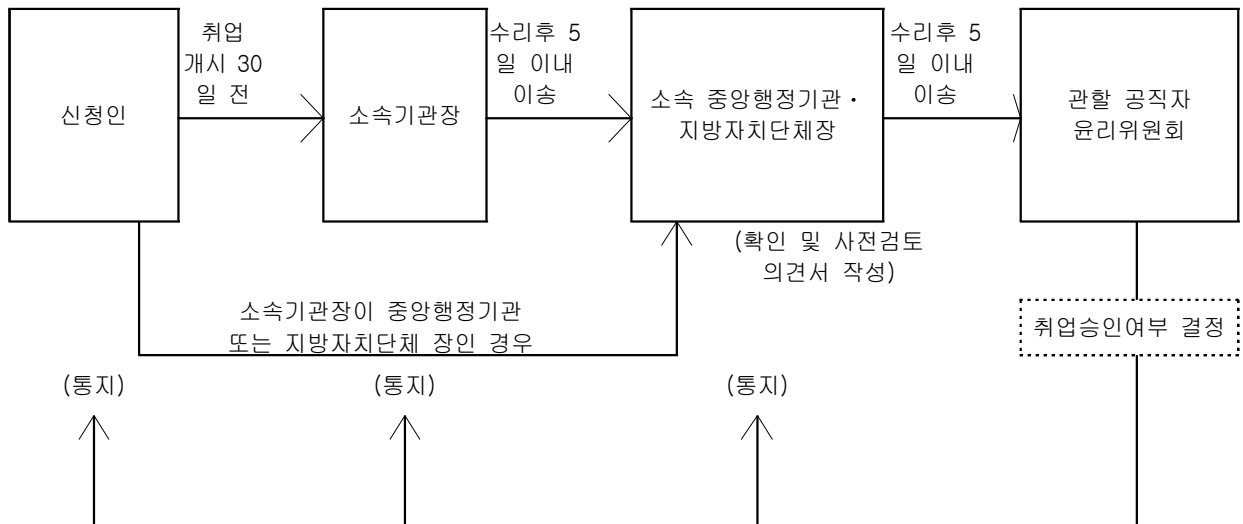
첨부서류

별지 제18호의7서식(취업 예정 확인서)을 함께 첨부하십시오.

### 작성방법

1. 소속·직위·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직위·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2.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 [예: 서기관, 8등급]
3. 기관의 규모 작성방법
  - 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 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은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적으십시오.

업무 처리절차



##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

### 1. 취업승인 신청자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및 직급 등

### 2. 취업예정기관 및 직위 등

취업예정기관 명칭	취업예정직위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및 외형거래액	취업예정일
주요 사업내용	담당예정업무
※ 구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으로 작성

### 3. 검토 사항

가. 취업심사대상자 해당 여부

나. **취업심사대상기관** 해당 여부

다.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 등(업무분장규정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파악)

근무기간	직위	직급등	부서명(기관명)	부서(기관)의 주요업무	비고

라.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에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제3항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구체적으로 작성)

마. 해당자가 취업예정기관에 취업되었을 경우 퇴직 전 소속기관·단체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이유와 적다고 보는 이유를 각각 작성)

바. 해당자의 퇴직 전 근무현황(상벌 관계)

사. 「공직자윤리법」 제18조제2항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해당자의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작성)

아.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 승인 심사 필요성 여부

자.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퇴직 사유, 공무원 연금 수급여부 등)

### 4. 종합 의견

#### 작성방법

1. 소속·직위·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직위·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2.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 [예: 서기관, 8등급]
3.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및 외형거래액 작성방법
  - 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외형거래액을,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 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인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은 연간외형거래액을,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적으십시오.
  - ※ 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작성도 가능합니다.

## 업무취급승인신청서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퇴직 전 소속	퇴직 전 직위	
	퇴직일	퇴직 전 직급 등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취업 (예정) 사실 ※개업 등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적절히 기재	기관명	취업예정직위	
	취업예정일	기관규모 (억원)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담당예정업무		외형거래액
업무취급 승인요청 사유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퇴직공직자 업무취급 승인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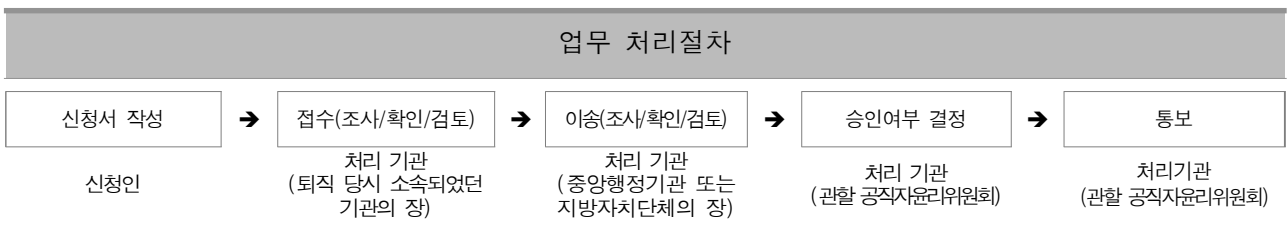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첨부서류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7서식의 취업예정확인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십시오.



## 업무취급 승인 신청에 관한 의견서

(앞 쪽)

신청자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퇴직 전 소속	퇴직 전 직위
	퇴직 전 직급 등	퇴직일
취업예정 기관현황 ※개업 등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적절히 기재	기관명	취업예정일
	취업예정직위	취업예정직급 등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연간 외형거래액
	주요 사업내용	
	담당예정업무	
검토 사항별 검토의견	1.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인지 여부	
	2. 승인을 신청한 업무가 법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업이 금지되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체적으로 작성하십시오)	
	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나.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다.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라.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마.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검토 사항별 검토의견	바.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심판에 관계되는 업무
	사. 취업예정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 · 심판에 관계되는 업무
	아. 그 밖의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b>취업심사대상 기관</b> 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3.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어 승인할 수 있는 사유
	(※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4. 신청인이 취업예정기관에 취업되었을 경우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여부	
종합 검토 의견	
첨부서류	1. 업무취급 승인 신청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2. 그 밖의 증명자료 등

## 청탁·알선행위 신고서(당사자 신고용)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등	휴대전화번호
	주소	
청탁·알선행위 퇴직공직자	성명	퇴직 전 소속
	퇴직 전 직위·직급	현재 소속 및 직업
신고내용	※ 청탁·알선행위의 일시·장소, 내용(법 위반행위 내용) 및 신고 취지 등을 기재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4제1항에 따라 청탁·알선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소속 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증명자료(첨부할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청탁·알선행위 신고서(제3자 신고용)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신고대상	청탁·알선받은 재직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청탁·알선했 퇴직공직자	성명	퇴직 전 소속
		퇴직 전 직위·직급	현재 소속 및 직업
신고내용	※ 청탁·알선의 일시·장소, 내용(법 위반행위 내용) 및 신고 취지 등을 기재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4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4제1항에 따라 청탁·알선 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소속 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증명자료(첨부할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취업심사대상자 퇴직 및 취업현황(   년도)

### 1. 총괄표(단위 : 명)

기관명	조사 기준일	퇴직자 현황					취업 현황					
		계	해당 연도 퇴직자	1년 전 퇴직자	2년 전 퇴직자	3년 전 퇴직자	계	승인	확인	임의 취업		

### 2. 해당 연도 퇴직자

퇴직 당시 소속기관	퇴직자 현황					연도 중 취업내용								
	직위	직급 등	성명	생년월일	퇴직 년월일	취업 기관명	취업 직위	취업 년월일	취업현황					
									계	승인	확인	임의 취업		

### 3. 1년 전 퇴직자

퇴직 당시 소속기관	퇴직자 현황					연도 중 취업내용								
	직위	직급 등	성명	생년월일	퇴직 년월일	취업 기관명	취업 직위	취업 년월일	취업현황					
									계	승인	확인	임의 취업		

### 4. 2년 전 퇴직자

퇴직 당시 소속기관	퇴직자 현황					연도 중 취업내용								
	직위	직급 등	성명	생년월일	퇴직 년월일	취업 기관명	취업 직위	취업 년월일	취업현황					
									계	승인	확인	임의 취업		

### 5. 3년 전 퇴직자

퇴직 당시 소속기관	퇴직자 현황					연도 중 취업내용								
	직위	직급 등	성명	생년월일	퇴직 년월일	취업 기관명	취업 직위	취업 년월일	취업현황					
									계	승인	확인	임의 취업		

### 작성방법

1. '해당 연도 퇴직자'는 조사연도 중 퇴직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 : 조사기준일이 2012. 6.30.인 경우 2012. 1. 1. ~ 2012. 6.30. 동안 퇴직한 사람)
2. '1년 전 퇴직자'는 조사연도 1년 전에 퇴직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 : 조사기준일이 2012. 6.30.인 경우 2011. 1. 1. ~ 2011. 12. 31. 동안 퇴직한 사람)
3. '2년 전 퇴직자'는 조사연도 2년 전에 퇴직한 사람을 말합니다.(예 : 조사기준일이 2012. 6.30. 인 경우 2010. 1. 1. ~ 2010. 12. 31. 동안 퇴직한 사람)
4. '3년 전 퇴직자'는 조사연도 3년 전에 퇴직한 사람을 말합니다.(예 : 조사기준일이 2012. 6.30. 인 경우 2009. 1. 1. ~ 2009. 12. 31. 동안 퇴직한 사람)
5. '취업기관명' 란에는 **취업심사대상기관**(영리사기업체, 법무·회계·세무 법인, 학교법인, 종합병원, 사회복지법인 등)의 명을 적으십시오.
6. '취업현황' 란에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취업자 중 위원회 승인 또는 확인을 받고 취업한 자와 임의로 취업하여 법률을 위반한 사람을 구분하여 해당란에 ○표시를 하십시오.

※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 취업사실 신고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퇴직 전 소속	직위(직급 등)		
	퇴직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취업사실	취업 기관명	직위(직급 등)		
	취업일	취업경로		
과거 취업사실	취업 기관명	직위(직급 등)	근무기간	
			~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취업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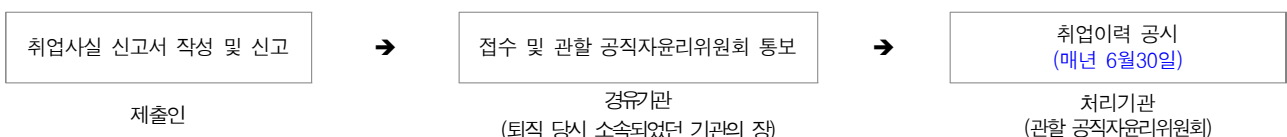
○○ 소속 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재직증명서 등 취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작성방법

1. 취업 제한여부 확인심사 및 취업승인 심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과거 취업기관은 취업사실을 신고하는 기관 전에 취업하였던 모든 기관을 말하며, 해당 기관명과 직위(직급), 근무기간(취업일과 퇴직일)을 적으십시오.

### 업무 처리절차



## 해임·징계 의결 요구서

대상자 인적사항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해임·징계 의결 요구 사유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임·징계 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공직자윤리위원회

청인

등록기관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

귀하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p><u>제2조의2(비상장주식의 평가액 계산방법) ① 영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이하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을 신고하는 재산등록의무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u></p> <p><u>② 영 제4조의3제2항의 계산식에서 1주당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의 가중평균액은 재산등록 기준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1주당 당기순이익을 최근의 사업연도 순으로 각각 3과 2와 1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u></p> <p><u>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연도별 1주당 당기순이익은 각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해당 재무제표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가액으로 한다.</u></p>

④ 영 제4조의3제2항의 계산식에서 1주당 순자산가치는 재산등록 기준일을 기준으로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순자산가액을 해당 재무제표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⑤ 영 제4조의3제5항에 따라 비상장주식 가액산정을 위한 정보의 요청은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3조의3(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6조의5제1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금융거래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구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르고, 이에 관한 금융기관의 자료 제출은 별지 제7호의3서식 및 별지 제7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7조의2(금융거래의 조회)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

제3조의3(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별지 제7호의3서식-----  
-----.

제7조의2(금융거래의 조회) -----  
-----

용 중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구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3서식 및 별지 제7호의4  
서식에 따르고, 입출금 거래명  
세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7호의5서식에, 이에 관  
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  
6서식에 따른다.

제15조(선물의 처분) ① 영 제29  
조에 따라 선물을 이관받은 기  
관의 장이 영 제30조제1항에 따  
라 국유재산으로 계속 관리·유  
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선물을 조달청장에게 이관하여  
처분하게 하였을 때에는 이를  
「물품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처분을 요청한 것  
으로 본다.

② (생략)

제16조(취업제한기관의 명세서 통  
보) 영 제33조제6항에 따른 취  
업제한기관의 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생략)

2. 법 제17조제1항제8호부터 제

-----  
-----  
----- 별지  
제7호의3서식-----  
-----  
-----  
-----  
-----.

제15조(선물의 처분) ① -----  
-----  
-----  
----- 국유·공유재산-----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  
서 통보) 영 제33조제7항-- 취  
업심사대상기관-----  
-----.

1. (현행과 같음)

2. -----

10호까지 및 영 제33조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의 명세서: 별지 제18호의2서식

3.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의 명세서: 별지 제18호의3서식

<신 설>

<신 설>

제16조의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영 제33조의2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에 따르며,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5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3(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의견서) ① 영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의견서는 별지 제18호의6서식에 따른다.

② (생략)

-----  
-----  
----- 취업심사대상기관 -----

3. ----- 취업심사대상기관 -----

4. 영 제3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 별지 제18호의4서식

5. 영 제3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 별지 제18호의5서식

제16조의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  
----- 별지 제18호의6서식 -----

----- 별지 제18호의7서식 -----.

제16조의3(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의견서) ① -----  
----- 별지 제18호의8서식 -----.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의4(우선 취업 신청) 영 제33조의4제1항에 따른 우선 취업 신청은 별지 제18호의7서식에 따른다.

제17조(취업승인) ① 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 신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18호의5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7조의2(업무취급승인신청서 및 의견서) ① 영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르며,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5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7조의4(부정한 청탁·알선 행위신고) 영 제35조의4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0호의6서식에 따른다.

제18조(취업현황 보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

제16조의4(우선 취업 신청) -----  
-----  
----- 별지 제18호의9서식-----  
-----.

제17조(취업승인) ① -----  
-----  
-----  
----- . ----- 별지 제18호의7서식-----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업무취급승인신청서 및 의견서) ① -----  
-----  
-----  
-----  
----- 별지 제18호의7서식-----.

②·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의4(청탁 또는 알선 행위신고) -----  
----- 별지 제20호의6서식 및 제20호의7서식-----  
-----.

제18조(취업현황 보고) -----  
-----

체의 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의 취업심사대상자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점검결과를 점검 완료일부터 3월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해임·징계 의결 요구 등 및 처리 결과 통보) ① 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및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의 요청이나 요구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② (생략)

-----  
-----  
-----  
----- 취업심사대상  
기관-----  
-----  
-----  
-----  
-----.

제19조(해임·징계 의결 요구 등 및 처리 결과 통보) ① 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  
----- 의결의 -----  
-----  
-----.

② (현행과 같음)